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일 반 회 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 무 부

Ⅰ. 일 반 회 계

1. 세 입

토지대여료
51 - 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토지대여료	477	699	699	485	485	△214	△30.6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토지대여에 따른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461	542	477	365

건물대여료
51 - 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건물대여료	524	703	703	613	613	△90	△12.8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660	656	524	694

기타관유물대여로
51 - 5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관유물 대여료	14	17	17	13	13	△4	△23.5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 대여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14	12	14	13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재산이자수입	554	331	331	264	264	△67	△20.2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 · 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182	140	554	1,133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 - 547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53	-	-	51	51	51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제주 검찰연수원의 사용료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	50	53	64

벌금 및 과료
56 - 56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벌금 및 과료	1,337,329	1,128,869	1,128,869	1,337,329	1,337,329	208,460	18.5

1. 법적 근거

1) 검찰 벌금

ㅇ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ㅇ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ㅇ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ㅇ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사무규칙**

2) 출입국 벌금

ㅇ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 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ㅇ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ㅇ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 ·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 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ㅇ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8. 제51조제1항 · 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삭제

ㅇ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ㅇ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 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72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4. 제74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
5. 제75조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6. 제76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 의무를 위반한 사람
7.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ㅇ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ㅇ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1,069,936	1,116,922	1,337,329	1,301,550

몰수금 및 추징금
56 - 56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몰수금 및 추징금	105,260	130,898	130,898	123,093	123,093	△7,805	△6.0

1. 법적 근거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형사소송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156,115	108,127	105,260	146,971

과태료
56 - 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과태료	11,915	12,167	12,167	11,154	11,154	△653	△5.4

1. 법적 근거

ㅇ **형사소송법 제44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12,074	11,647	11,915	11,123

징계부과금
56 - 564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징계부과금	6	30	30	31	31	1	3.3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88	49	686	61

변상금
57 - 57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변상금	114	252	252	202	202	△50	△19.8

1. 법적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2. 세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109	387	114	86

위약금
57 - 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위약금	1,494	1,541	1,541	1,826	1,826	285	18.5

1. 법적 근거

ㅇ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ㅇ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1,600	2,383	1,494	766

가산금
58 - 58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가산금	2	39	39	2	2	△37	△94.9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각종 경비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2	1	2	10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경상이전수입	5,983	9,094	9,094	7,945	7,945	△1,149	△12.6

1. 법적 근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3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국측 공무상 손해배상 분담금

-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분담금

○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훈련비 반환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9,140	8,923	5,983	6,878

면허료 및 수수료
65 - 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면허료 및 수수료	37,371	22,061	22,061	32,427	32,427	10,366	47.0

1. 법적 근거

○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13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의 신청)**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신청 등)**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세입 개요

○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 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수수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수수료, 각종 출입국허가증 발급 민원수수료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9,736	30,195	37,371	23,925

기타잡수입
69 -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잡수입	1,274	740	740	871	871	131	17.7

1.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9조(감정대상 및 기간)**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및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4조(비용)**

① 피감정인에 대한 급양 및 수용비, 진료비, 감정료 등 감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액 의뢰기관으로 징수한 후 이를 국고에 세입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수수료, 폐기물 및 불용품 매각대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632	709	1,274	815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 - 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면허료 및 수수료	18,652	17,338	17,338	26,880	26,880	9,542	55.0

1.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예외-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함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2. 세입 개요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10,731	14,296	18,652	19,195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69 -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154	151	151	137	137	△14	△9.3

1.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예외-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함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세입 개요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수납액	37	41	154	147

2. 세 출

사 업 명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1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3,830	4,022	4,022	2,961	2,961	△1,061	△26.4

4. 사업목적

○ 국가소송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수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 각 부처 소송지휘 및 정부가 당사자인 헌법재판 수행

○ 검찰청, 정부 각 부처 등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배치 및 운영으로 국가·행정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전항)

-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44조)
- 정부법무공단법(전항)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전항)
- 공익법무관관리지침(법무부예규656호)

○ 추진경위
- 1951.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 및 소송사무의 적정 관리 도모
- 1988. 9.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제출
- 1994. 12.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도부터 사법시험합격자 중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에 종사
- 2007. 12. 정부법무공단법 공포('07.12.21. 시행) 및 정부법무공단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07. 5. 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7년~계속(국가송무수행), 1995년~계속(공익법무관운영)
○ 사업규모 : 국가소송(접수 10,585건, 처리 3,802건)
행정소송(접수 46,083건, 처리 20,109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 원고 또는 피고 소제기 → 소장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소송수행자 지정(검사, 공익법무관, 법무부 직원, 소송수행청 공무원) → 소송진행 및 보고(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법정출석 대응) → 판결선고 → 판결문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항소·상고 여부 판단(국가소송은 검찰지휘, 행정소송은 법무부) → 확정 또는 항소심, 상고심 진행

사 업 명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배상금 지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가배상금 지급	100,253	100,000	100,000	131,765	131,765	31,765	31.8

4. 사업목적

○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단, 특별회계·국방부 소관 제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 추진경위

- '67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의한 국가배상금 및 소송비용지급을 목적으로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6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법원판결금(422건, 96,285백만원), 배상심의회 결정금(81건, 246백만원), 소송비용확정액(753건, 10,169백만원), 소송비용(5,578건, 1,046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 집행)

ㅇ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 사업 수혜자 : 국가소송, 행정소송과 관련 있는 정부 각 부처 및 소송에서 승소한 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 배상신청 또는 국가소송 제기 → 배상결정 또는 확정판결 → 배상금 지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 집행)

사 업 명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1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287	658	658	678	678	20	3.0

4. 사업목적

○ 정부법무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 보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

○ 추진경위

- 국가로펌으로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당기간 예산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다른 공단과 달리

설립 첫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 상당부분 적자가 발생하였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업무부담 가중됨

- 이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소송 등에서 국가 등의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2011년부터 국가가 지원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소송 1,764건, 법률자문 2,323건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정부법무공단

○ 사업 수혜자 : 정부법무공단(궁극적 수혜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부법무공단	정액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 제1호, 제21조의2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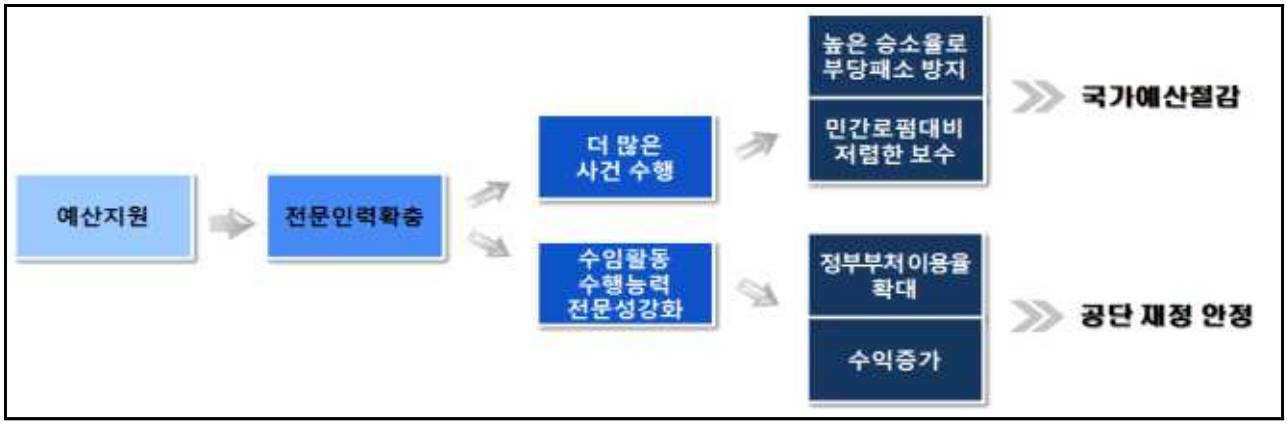

사 업 명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7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기업환경지수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업환경지수 개선	222	253	253	2,653	2,653	2,400	948.6

4. 사업목적

-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과를 세계은행과 각국에 알려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도모
- 투자유치 확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기업환경 개선방향을 도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제32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제10조, 제11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추진경위
- 법무부·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협력 대상국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 서울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으로 협력 대상국의 기업환경개선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를 상승시켜 투자유치 확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환경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 2019. 5.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미국 워싱턴 현지 세미나 개최
- 2019. 11. 기업환경개선 도산전문가 초청 세미나
- 2019. 11. 기업환경지수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 2020. 4. 기업환경평가 대비 세계은행 화상회의 개최(3회)
- 2020. 8. 기업환경지수개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 세미나(온・오프라인 병행)
- 2020. 12. 기업환경지수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온・오프라인 병행)
- 2021. 8. 기업환경지수개선 국제세미나 개최(온・오프라인 병행)
- 2021. 11. 기업환경지수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온・오프라인 병행)
- 2022. 11.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
- 2022.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23. 11.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
- 2023.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24. 10.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
- 2024.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업환경지수개선 국제컨퍼런스('20. 1회), 해외 현지세미나('20.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 사업 수혜자 : 우리나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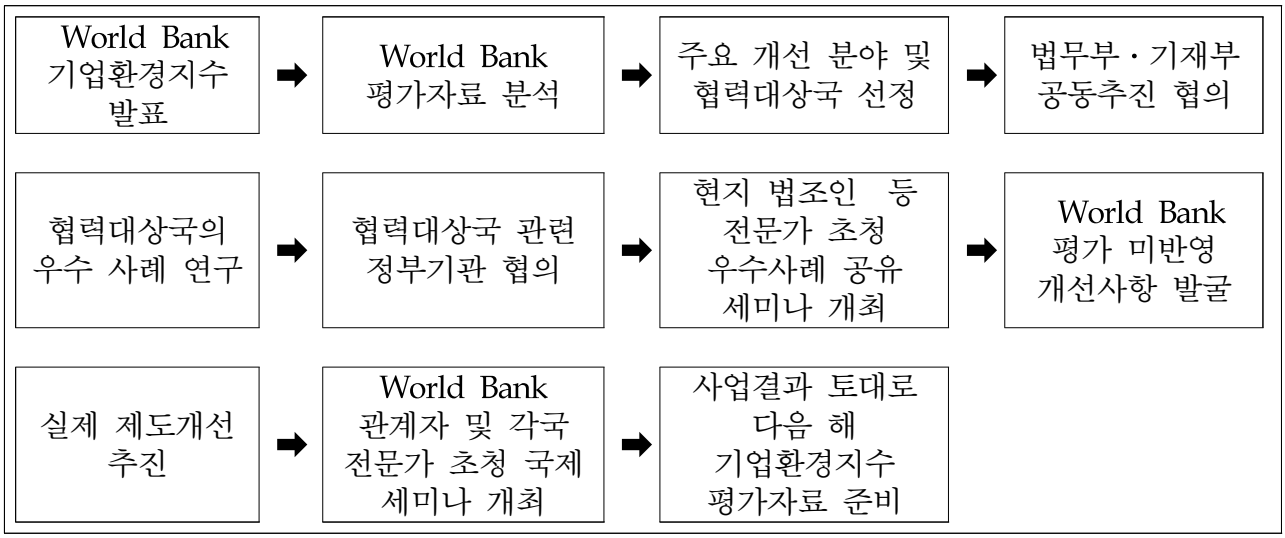
World Bank 기업환경지수 발표
World Bank 평가자료 분석
주요 개선 분야 및 협력대상국 선정
법무부·기재부 공동추진 협의
협력대상국의 우수 사례 연구
협력대상국 관련 정부기관 협의
현지 법조인 등 전문가 초청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개최
World Bank 평가 미반영 개선사항 발굴
실제 제도개선 추진
World Bank 관계자 및 각국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
사업결과 토대로 다음 해 기업환경지수 평가자료 준비

사 업 명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1033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0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4,341	5,162	5,162	4,659	4,659	△503	△9.7

4. 사업목적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사법령의 지속적 정비와 효율적 시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 실현에 기여

○ 국민의 재산관계·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과 그 밖의 민사 법령을 선진화

○ 기타 민원 질의·해설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집합건물법·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시행령 등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법무자료 발간 및 도서관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5조(예산의 지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8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ㅇ 추진경위
- 2021. 1. 민법 일부개정
- 2021.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21.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6. 민법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21. 9. 민법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21.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21. 1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2.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2022.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1.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2. 민법 일부개정
- 2023.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회제출
- 2023.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2023.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2023.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8.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2023. 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7. 공익법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7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민법 등 75개 법령(법률 54개, 대통령령 등 21개)에 대한 제·개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대행(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전액국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7. 사업 집행절차

1	개선과제 발굴. 연구 및 법령안 작성
↓	
2	부처협의, 입법예고
↓	
3	법령안 확정
↓	
4	법제처 심사
↓	
5	차관, 국무회의 상정.심의
↓	
6	국회제출
↓	
7	법사위심사
↓	
8	본회의상정
↓	
9	정부이송, 공포

※ 개선과제 발굴: 학술대회, 연구용역발주를 통한 개정 대상 및 범위 사전 조사

※ 개선과제 연구: 개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연구(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등을 통해 토론)

※ 법령안 작성: 분과위원회별 담당 과제에 대한 개정시안 작성, 전체위원회 표결 등

사 업 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4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3,282	3,400	3,400	2,595	2,595	△805	△23.7

4. 사업목적

- ㅇ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
- ㅇ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ㅇ 기업규제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발굴과 상사법 분야의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등 상사 법제 분야 선진화를 위한 법제 연구 추진
- ㅇ 상사법 분야의 주요 국내외 학회 및 회의 참여 등을 통해 상사법제의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이론과 실무, 글로벌 스탠더드가 조화된 선진 상사법제 구축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 새로운 기부 방법인 공익신탁 제도 정착을 통해 기부와 나눔의 문화 확산
○ 소송 외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로 사회 갈등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재도약의 발판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상법, 상법시행법, 상업등기법, 신탁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 추진경위
- 2019. 9. 전자증권제도 도입 위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면 시행
- 2019. 11.「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2020. 1.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20. 2. 감사위원회 자격요건 정비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20. 2.~6. 블록체인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심의
- 2020. 6.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2020. 6.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0. 6.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 2020. 8. 도산 전문분야 9988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자문단 정비
- 2020. 9.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20. 11. 2020년도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2020. 12. “신탁”을 주제로 한 선진법제포럼개최
- 2021. 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상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21. 2. 코로나 19상황을 감안한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방안 발표 및 개정상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언택트 설명회 개최 등 對국민 홍보활동 지속

- 2021. 6. 약속 어음거래의 폐해를 최소화 하고 기업간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속어음제도 개선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 2021. 7. 창업 청년들과의 현장 대화 및 정부-대학 간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2021. 8. 스타트업 법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 2021. 9. 스타트업 대상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변호사 확대
- 2021. 10.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2021. 11. 선진상사법률연구(등재학술지) 등 법제 정보지 발간 및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개최를 통해 선진 법제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입법 자료로 활용
- 2021. 12. 법무자문위원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21. 연중)
- 2021. 12.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노력을 지원하고자, 기업에게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경영'의 기준 및 구체적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기업 인권경영 지침' 제도화 방안 연구(' 21. 연중)
- 2021. 12.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과 기업법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실질적 법률 지원(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경영진단식 법률지원 서비스로 특화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21. 연중)
- 2022. 2. 스타트업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창업 준비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 구축, 서비스 오픈
- 2022. 8. 법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22. 7. 13.) 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1차 과제(32개 형벌규정) 개선방안 발표
- 2022. 9.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 청취
- 2022. 12. 경제 관련 법령의 입법수요 발굴 및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법률 제·개정 등 추진 및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 특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대학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1인의 상법 전문가로 구성
- 2022. 12.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Ⅴ) 제61차 회의 참석(도산절차에서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 도산절차의 준거법 등)

- 2022. 12. 추가 설치된 부산회생법원의 역할 증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에 참석하고 우리 부 의견을 제출하여 대응함
- 2022. 12. 도산절차에서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 도산절차의 준거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연합 상거래법위원회 도산법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 및 대응
- 2023. 1~9.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특별위원회 회의 연중 9회 개최
- 2023. 11.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3. 1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3. 12. 보험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023. 12. 2023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
- 2023.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75건)
- 2024. 2.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2024. 6.~12. 경제형벌 개선을 관련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024. 8.~9.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024. 11. 2024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2024. 12.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2024~2028)
- 2024.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46건)
- 코로나 19 이후 대응을 위한 도산제도 개선 및 기업구조조정의 종합적 운영방향 관련 관계기관 협의 참여 및 기업회생절차 등 법제도 개선 준비(연중)
- 기부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법무부가 인가·관리하고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공익신탁제도 운영 및 홍보 지속(연중)
-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경영진단식 법률지원 서비스로 특화된 ‘창업중소기업 법률지원(연중)
- 선진상사법률연구(등재학술지) 법제 정보지 발간(1년 4회 발간)등 선진 법제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입법 자료로 활용(연중)
-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지로 도약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분쟁해결 시설인「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운영,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에 따라 중재

활성화 사업수행(연중)

6. 주요내용

- ㅇ 사업기간 : 2007 ~ 계속사업
- ㅇ 사업규모 :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대한상사중재원)
- ㅇ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대한상사중재원
- ㅇ 사업 수혜자 : 기업, 국민
-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상사중재원	정액	중재법 제40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 법률 제·개정 사업

법무자문위원회 법률제개정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회의록 녹취	➡	관계부처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	안 확정 해설자료 발간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	국회제출	➡	법사위 심의	➡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	대통령서명	➡	공 포		

사 업 명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1038-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0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1,273	820	-	826	-	6	0.7

4. 사업목적

○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선진법률서비스 인프라 구축

· '10. 8. 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 전자공증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 '18. 1. 부터 화상공증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공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선진 법률문화 조성

·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을 강화, 서민 법률분쟁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선진 법률문화 조성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공증인 직무교육, 공증사무 감사·징계 등 공증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증인법 제78조(감독기관),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80조(서류의 검열), 제81조(이의신청),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제83조(징계의 종류), 제84조(징계기관),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제85조(징계위원회),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제85조의3(제척 사유), 제85조의4(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6(위임규정), 제85조의7(「형사소송법」등의 준용)
- 공증인법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 등의 보존 등),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10(위임규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 · 보급)

○ 추진경위

- 2018. 6. 화상공증제도 시행
- 2019. 12.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 2022. 1.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22. 1. ~ 12. 공증인 신규임명 4명 및 재임명 18명, 면직 3명, 인가취소 4건 등
- 2022. 1. ~ 12. 총 172곳 대상 공증 감사 수행
- 2022. 2.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증인 19인 징계 결정
- 2022. 1. ~ 12. 공증인 온라인 직무교육 실시 3회
- 2022. 7. 공증제도개선위원회 본회의 개최
- 2022. 1. ~ 12.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실무협의회 총 6회 개최
- 2022. 6.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BPR/ISP 사업 완료
- 2022. 7.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기재부 예산심의 설명 2회 실시
- 2022. 8.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관련 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소 연계 관련 회의
- 2022. 9. ~ 11.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국회 법사위·예결위 등 설명 16회 실시
- 2022. 9.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 제안 검토
- 2022. 10.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 제안 1단계 선정 지원
- 2022. 11.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 관련 자문 회의 3회 참석·검토
- 2022. 11.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블록체인 도입 관련 서면 자문 3건 실시·검토
- 2022. 12.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발표
- 2022. 12.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 최종 선정
- 2023. 3.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운영
- 2024. 6.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시스템 사서증서 및 종이공증 고도화

6. 주요내용

- ㅇ 사업기간 : 2009 ~ 계속
- ㅇ 사업규모 : 공증인 325명·곳(임명공증인 83명, 인가공증인 242곳), 공증처리건수 누적 약 4,000만건
-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ㅇ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증제도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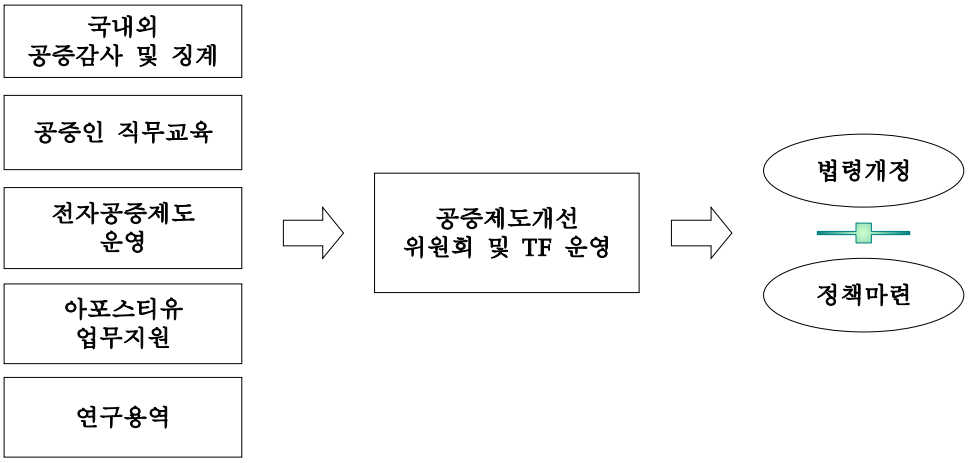

ㅇ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공정증서 작성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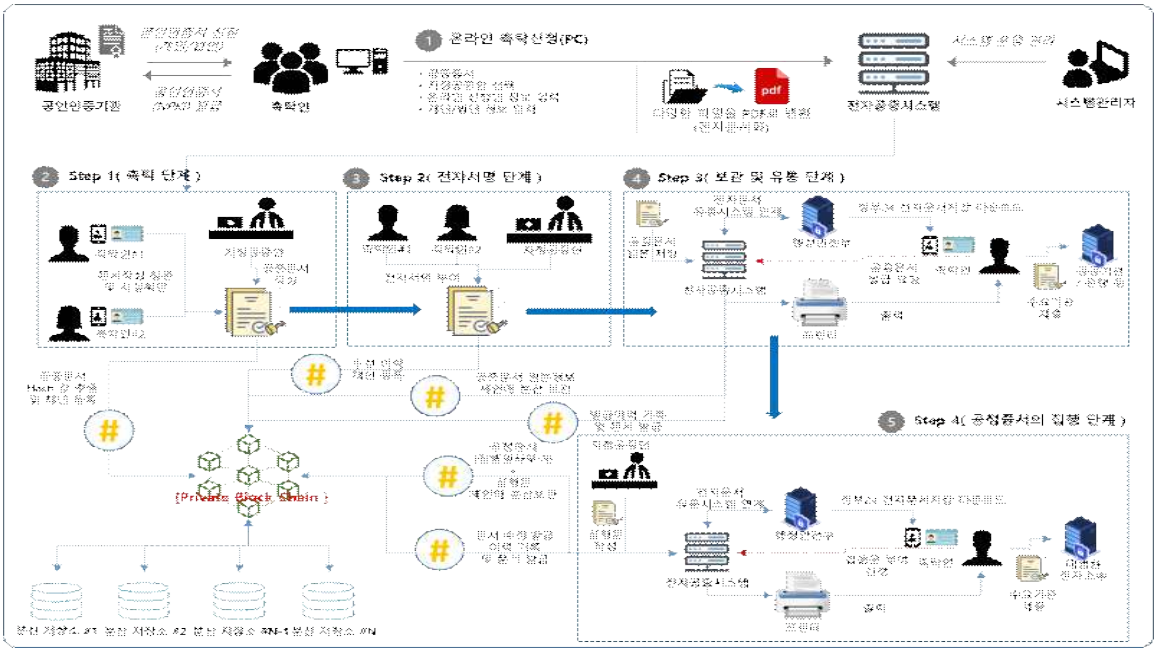

사 업 명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038-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3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23	744	-	779	-	35	4.7

4. 사업목적

○ 법조환경 변화에 따라 변호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변호사 관리·감독 및 비위 예방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의뢰인과 변호사의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 추진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 변호사법 제41조(설립절차)

- 변호사제도개선 및 징계 :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설치) 등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 제89조의3(법조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 한국법학원 지원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2조(보조금)

○ 추진경위

- 2019. 5. 강원도 산불피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 2019. 8.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 위촉
- 2019. 12.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및 제도 개선 세미나
- 2020. 1. 법률사무종사기관 대상 서면 실태조사 실시
- 2020. 4. 코로나 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 2020. 8.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및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
- 2020. 12. 마을변호사 가이드라인 배포 등 홍보 실시
- 2021. 9. ~ 22. 7. 리걸테크 TF 구성·운영(기간 중 총8회 진행)
- 2022. 6. 마을변호사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및 활동지원(전국 7팀, 총원 32명)
- 2023. 11.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 2024. 12. 전국 1,425개 읍면동에서 1,239명의 마을변호사와 1,580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 활동중.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 제도개선위원회 2개분과, 변호사 등록인원 31,284명, 법조윤리관련 수임자료 심사 4,696명, 징계개시신청 등 21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변호사제도의 선진화), 민간경상보조(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법조윤리협의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변호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법조윤리협의회	정액	변호사법 제89조의3

7. 사업 집행 절차

- 변호사 제도개선 등

변호사 징계
마을변호사 지원
법조윤리협의회 지원
변호사시험합격자 실무연수지원
민·상사법학연구

⇨ 변호사제도개선 위원회 및 TF 운영 ⇨ 법령개정 / 정책마련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법무법인 설립, 정관 변경 등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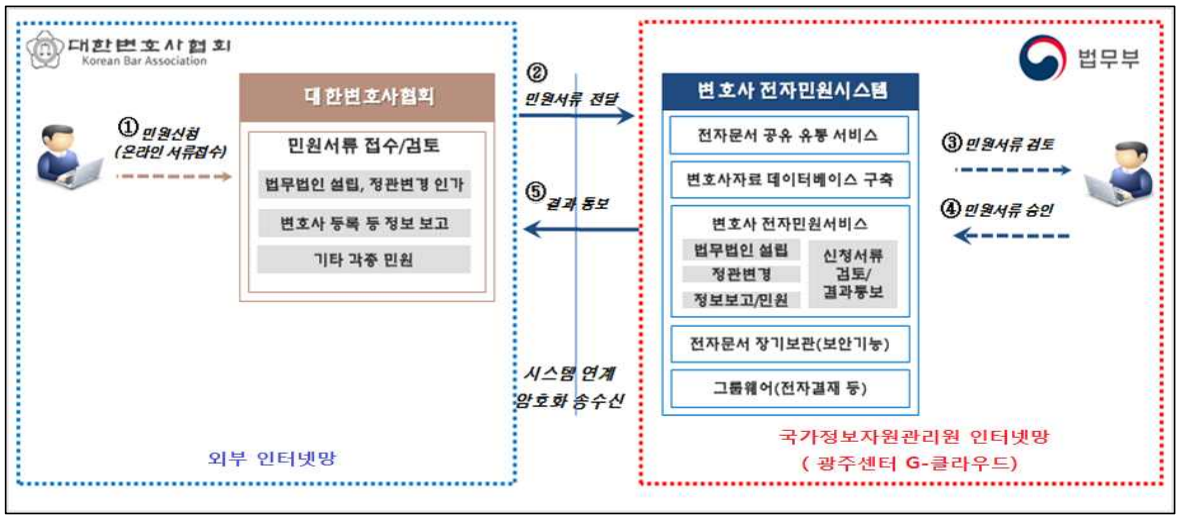

사 업 명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1038-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5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4,439	5,197	5,197	5,283	5,283	86	1.7

4. 사업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법조인 선발

○ 법률시장 개방 등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 변호사시험법 제8조(시험의 방법)

○ 추진경위 :

- 변호사시험 : 2007. 7.「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됨에 따라 2012. 1월 최초 변호사시험 실시(매년 1회 실시)
- 법조윤리시험 : 2009.8. 변호사시험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필수과목 중의 하나인 법조윤리시험을 2010. 10. 9. 최초 실시(매년 1회 실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매년 2회 시험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변호사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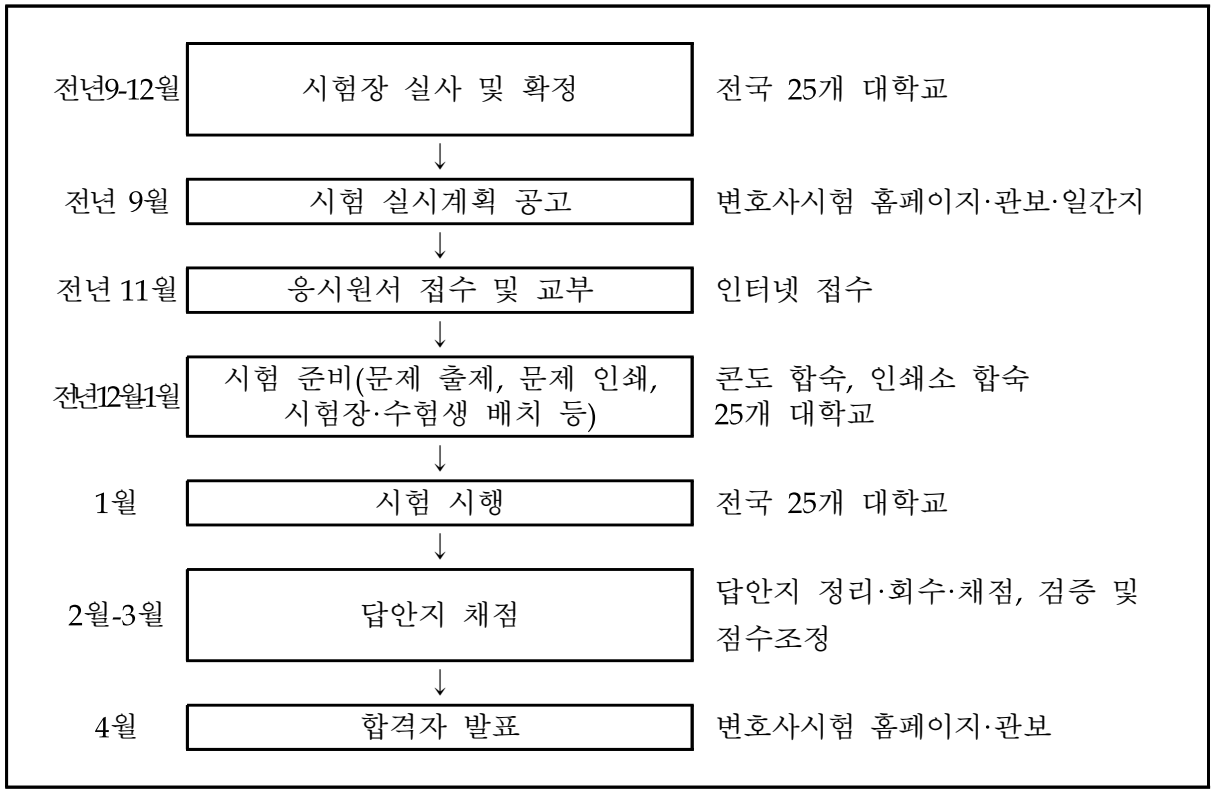

○ 법조윤리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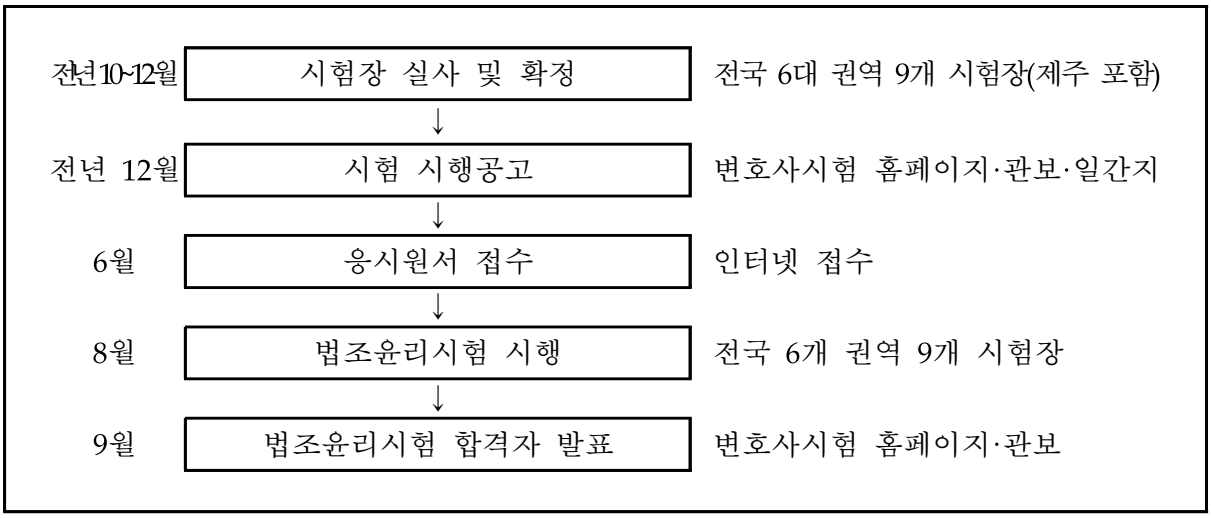
전년10~12월
시험장 실사 및 확정
전국 6대 권역 9개 시험장(제주 포함)
전년 12월
시험 시행공고
변호사시험 홈페이지·관보·일간지
6월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8월
법조윤리시험 시행
전국 6개 권역 9개 시험장
9월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관보

사 업 명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104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1	300
명칭	법무활동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646	766	766	771	771	5	0.7

4. 사업목적

○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통일법제 통합DB 내실화, 북한법령 및 통일대비 법률쟁점 심층 연구로 통일대비 법무인프라 확충 및 통일준비를 구체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에관한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9조 제3항 제22호 내지 제24호

○ 추진경위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은 ① 법무부 및 각 부처의 법률통합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원, ② 남북법률통합(안)을 곧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비, ③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2002년 '베니스위원회 참여사업' 목적으로 최초 예산 배정

※ 베니스위원회는 동유럽 체재전환국에 대한 법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 2006. 6. 1. 베니스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 2006년부터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로 사업명칭 변경 및 사업 목적 확대
- 2010. 2. 정부의 대북정책 공유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적된 통일법제 관련 연구성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연 4회)
- 2011년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률통합(안) 마련 등을 위한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배정
- 2012. 5.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사업'과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을 과목구조 개편하여 하나의 단위 사업인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으로 통합
- 최근 남북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므로, 통일에 대비한 법제 및 남북법률통합 방안 수립의 체계화·고도화 필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규모 :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 통일법제 통합DB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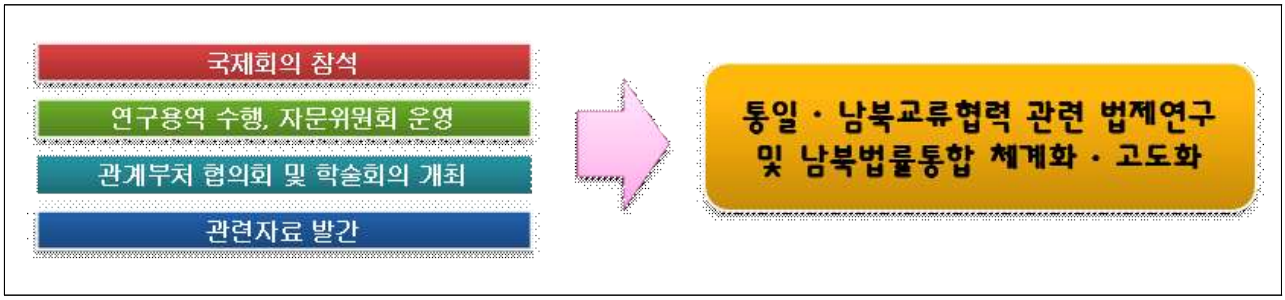

사 업 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04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 보존소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2	300
명칭	법무활동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북한인권기록 보존소 운영	237	278	278	286	286	8	2.9

4. 사업목적

○ 북한인권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주민 인권개선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제4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 추진경위

- 사업시작 년도 : 2017년
- 추진배경
  · 북한인권법 제정('16. 3.)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16. 10.)
  · 북한인권법 입법취지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이를 통한 인권침해 억제
  · 국정과제 : 북한인권 개선
- 중점과제
  · 북한인권자료의 체계적인 분석·보존·관리
  · 북한인권자료의 DB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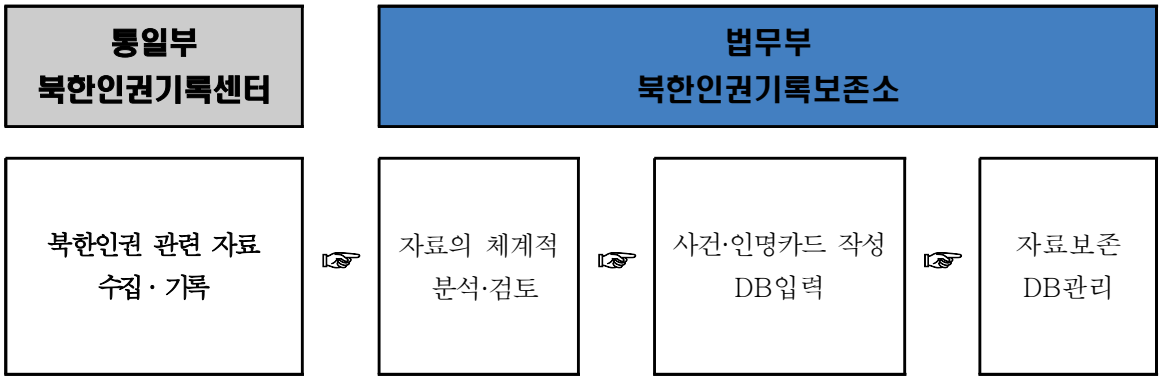

사 업 명
법률구조(1131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법률구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법률구조	59,795	64,817	64,817	67,337	67,337	2,520	3.9

4.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대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기본적 인권옹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제12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27조【재판

받을 권리】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책무】
- 법률구조법 제4조 【보조금의 지급】
- 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법률구조법 제7조 2항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국가 부담의무】
- 법률구조법 제10조 【사무소】

○ 추진경위

- '56. 8. 여성법률상담소 창설
- '72. 7. 대한법률구조협회 발족, 법률구조사업 추진
- '87. 7. 법률구조법 제정
- '87. 9.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 '88.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법인 등록
- '94. 12. 법률구조법 개정(공익법무관 법률구조 업무 종사)
- '96. 6.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 법률구조
- '00. 7.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 실시
- '02.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법인 등록
- '08. 3. 법률구조법 개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추진실적('24년 법률구조 실적)>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가사 등 법률구조 117,182건, 형사변호 16,031건, 법률상담 958,659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사, 가사 등 법률구조 8,898건, 법률상담 44,575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민사, 가사 등 법률구조 3,884건, 법률상담 16,269건)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사업 수혜자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 개인회생·파산신청자, 범죄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업인,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 무 부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중기사업계획의 검토 및 제출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1월) ・(제출) 공단 → 법무부	→ ←	○사업 검토 및 제출(1월) ・(제출) 법무부 → 기재부
⇩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제출		예산 제출 및 협의·확정
○법률구조사업 예산 편성 및 제출(5월) ・(수립) 법률구조 실적, 국정과제 등 검토 ・(제출) 공단 → 법무부	→ ←	○(제출 및 협의) 법무부→기획재정부(6~8월)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국회(9~12월)
⇩		
사업계획 편성 및 승인신청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 ○이사회 의결 및 법무부 승인 신청(12월)	→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12월) ・사업의 적정성, 예산 편성지침 준수 여부 등 검토
⇩		
법률구조사업 수행		사업 집행의 관리·감독

○법률구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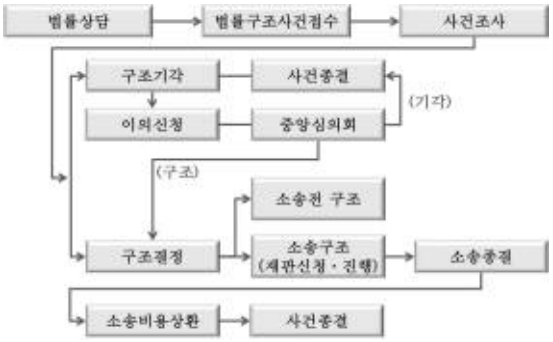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보고(월별·분기별·연도별)
・ 국정과제 등 관리
○공단 업무 자체평가 및 직원 성과관리(반기별)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수립 및 추진(연중)
○감사실의 정기·특별감사 실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실시

→
←

○사업추진 현황의 관리·감독(월 1회)
・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 국정과제 추진상황 관리·점검 및 점검 결과 총괄실 보고(정기·수시)
○예산 집행 실적 감독(분기)
・ 세출예산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
○인권구조과 지도점검(수시)
・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 실태 등 현장 점검
○감사담당관실 정기감사
・ 법률구조사건 처리 실태, 국고보조금 집행 적정성, 예납금·보관금 관리 현황, 사건 처리규칙 준수 여부
○결산 승인(익년 4월)

⇳

기재부, 국회, 감사원(관리·감독)

○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
○ 감사원 감사

사 업 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1131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030	4,998	4,998	5,143	5,143	145	2.9

4.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배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 추진경위

- 2011. 4.~2012. 3.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시범사업 실시
- 2012. 5. 법률홈닥터 20명 정식채용
- 2014. 5.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20개에서 40개 기관으로 확대
- 2017.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40개에서 60개 기관으로 확대
- 2018. 2.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 서비스 개시
- 2018. 5. 법률홈닥터 5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60개에서 65개 기관으로 확대
- 2020. 5.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범정부수습지원단」법률 지원
- 2022. 8.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2. 10.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2. 1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3. 7.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4. 2.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4. 6.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5. 1. '제주항공 여객기 재난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2년부터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65개 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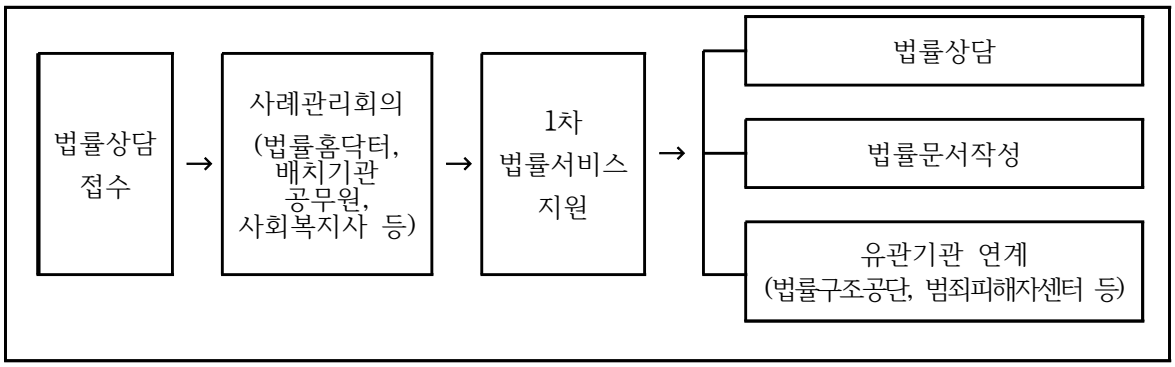

사 업 명
인권교육 (11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0
명칭	인권활동	인권증진	인권교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인권교육	212	204	204	191	191	△13	△6.4

4. 사업목적

- 「국가 법질서 확립」의 전제 조건인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기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과 현실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법무행정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소양과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인권침해 사건 사전 예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제6항,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고문방지협약 제10조,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2006. 5. 법무부의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인권국 설립
- 2007. 5. 확정·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주요 이행과제 중 하나로, 법집행과정에서 빈발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 예방하여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경쟁력 도모 위해 사업 실시
- 법집행 작용의 현실과 법무행정 공무원의 직무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인권교육 시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8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ㅇ 사업 수혜자 : 법무행정 관련 공무원 및 피의자, 수용자, 피해자 등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권감수성훈련

검찰·교정·보호·출입국 각 직렬 주무부서를 통해 교육대상자 선발(24명) → 교육대상자 사전설문조사 → 직렬별 내부강사에 의한 교육실시 → 교육대상자 사후설문조사

○ 1:1 맞춤형·체험형 교육

교육장소 협조의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 대검찰청을 통해 교육대상자 선발 → (오전) 모의 피의자신문 과정 영상녹화 → (오후) 외부 교수 초빙해 조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실시 → 교육대상자 설문조사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일선기관 교육 협조의뢰 → 외부강사와 일선기관 연결 → 외부강사 방문교육 실시 → 교육시행 보고서제출

사 업 명
아동인권 증진(11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2
명칭	인권활동	인권증진	아동인권 증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아동인권 증진	256	245	245	245	245	-	-

4. 사업목적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수사과정에서 의사·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적정처분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사건관리회의 지원·관리

○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등

○ **(아동인권 관련 연구)**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추진경위

- 중대아동학대범죄의 지속적 발생 이후 단일 부처로는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2012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복지영역과 사법영역으로 소관사항을 나누어 협력하기로 하고 「아동복지법」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함께 추진하여 '13. 12. 31. 두 법안 국회 통과
- '14. 2.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범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 대책」발표
- '14. 9. 시행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현장조치·수사·재판·아동보호절차 등 전문지식을 교육하게 되었으며, 국내인권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됨
- '16. 3.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법무부·복지부·교육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마련
  ※ '18.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재점검 및 보완
- '17. 12.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상담·치료 위탁을 신설하고 보호처분·이수명령을 불이행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20.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1. 1. 아동친화적 환경에서의 아동학대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1. 2.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아동학대살해죄 신설·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및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23. 3.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공동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 편의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대상자를 아동학대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등으로 확대
- '24. 12.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5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 사업 수혜자 : 18세 미만 아동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적정하게 처분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등 지역 내 아동학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검찰청의 사건관리회의를 지원·관리함
  ※ 근거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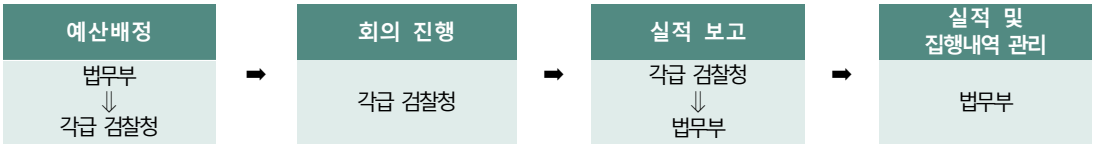

-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 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홍보물 인쇄·배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아동인권 증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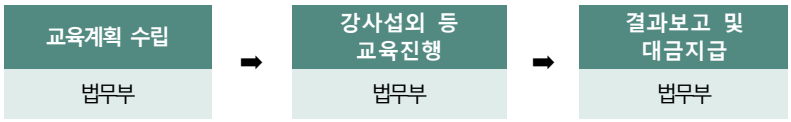

<아동인권 증진 홍보>

- (아동인권 증진 연구)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인권 증진 관련 연구주제·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정책에 반영

<아동인권 증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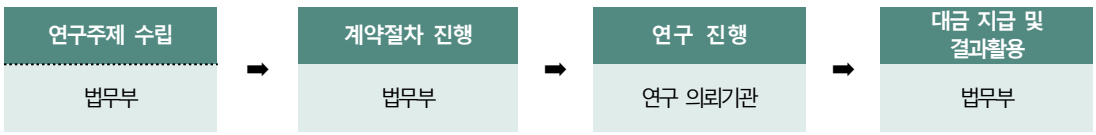

사 업 명
국제인권역량강화(1139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1139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국제인권증진	국제인권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국제인권 역량강화	206	241	241	246	246	5	2.1

4. 사업목적

○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및 국내인권정책과의 연계 강화

- 유엔 인권규범에 대한 민간 전문인력 채용 및 유관부처·시민사회·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기초로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유엔의 심의·질의·조사·개인진정 절차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인권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권 보호·증진 체계 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등에 따라 법무부는 인권옹호 사무의 일환으로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인권 관련 국제조약 법령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383호) 제3조**에 따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주관함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4. 위원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진정을 심리한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제시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29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추진경위

- 대한민국은 '78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법무부는 이 중 4개 협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총괄부처임
- 위 4개 협약은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국내인권상황 심의 수검 의무를 규정하며,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심리 절차를 둠
- 법무부는 그 외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등 기타 인권기구의 조사·질의에 대해서도 위 4개 협약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의 주무부처임
- 이에 국제인권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국내인권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제인권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통해 국내인권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17년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제인권조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관련 업무

- 국제인권조약위원회에 제출되는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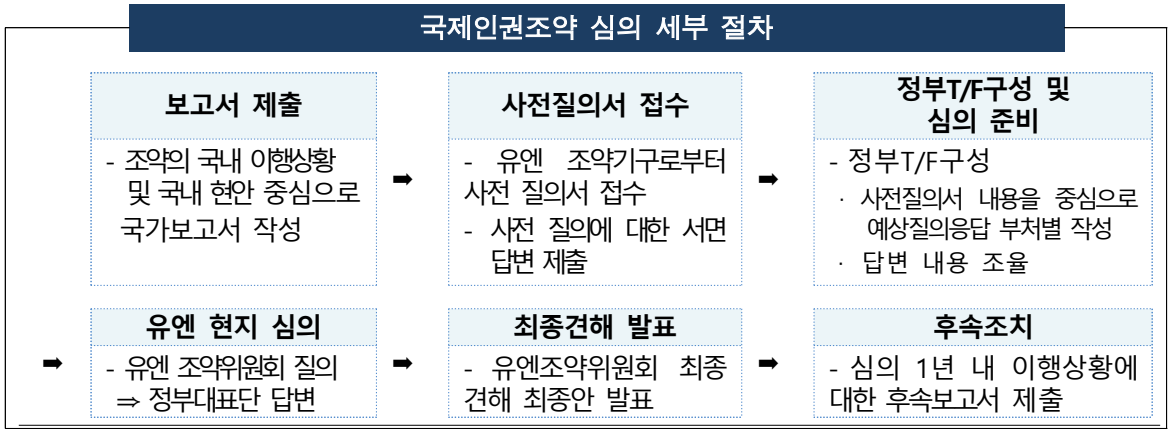

- 국제인권조약위원회 등에 제기된 개인진정에 대한 정부답변서 작성
- 기타 국제인권규범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 제출 수시

○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이행입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검토

○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인권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검토·간담회 개최

사 업 명
이민정책개발지원 (12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출입국관리	국제이민협력	이민정책개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이민정책개발지원	370	386	386	190	190	△196	△50.8

4. 사업목적

-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의 이민정책 사례연구 및 정책 관련 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이민정책개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제22조

○ 추진경위

- 외국인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과 국제교류를 활성화
-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국제역량과 전문성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출입국관리 해외사례 연구

해외연구 및 출장계획수립(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위탁교육훈련)→ 해외사례연구 출장자 선발 → 출장 및 파견 명령 → 출장업무수행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법무부 지식마당 등재(직원 공유) → 직원업무 활용 → 성과평가(만족도 조사)

▪ 이민정책 연구

정책연구과제 선정 → 연구용역 입찰 → 수행기관 선정 → 연구수행 → 연구보고서 제출 → 프리즘 등록 → 정책연구결과 평가

사 업 명
이민정책연구원운영 (12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2
명칭	출입국관리	국제이민협력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이민정책연구원운영	2,268	2,562	2,562	3,455	3,455	893	34.9

4. 사업목적

- 국가 간 이주현상을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연구과제 수행으로 효과적인 외국인정책 수행을 위한 연구원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2조의2 (이민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09.6.30)

○ 추진경위

- '07.11.19. 법무부-국제이주기구-경기도 3자간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양해각서 체결
- '09.06.30 국제기구인 IOM과 협정체결

- ’09.12.17. IOM이민정책연구원 개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이민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민정책연구원	정액	- 국제기구인 IOM과의 협정에 의거(’09.6.30협정체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7. 사업 집행절차

▪ 이민정책연구원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승인 → 국고 교부 → 이민정책연구원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결산

사 업 명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12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46,406	51,419	51,419	55,163	55,163	3,744	7.3

4. 사업목적

- 출입국기관 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유지보수 등 지원으로 원활한 이민행정 업무 수행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령)

○ 추진경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출입국관리 소속기관의 시설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수요파악 → 예산확보 및 편성 →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계약 → 시설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 예산집행 → 결산

사 업 명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12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4
명칭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6,080	5,757	5,757	9,849	9,849	4,092	71.1

4. 사업목적

- 외국인등록증 발급개선을 통한 신분증 위조방지 보안요소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1항

-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2009. 06. 외국인등록증의 허술한 보안요소로 인한 위·변조 관련 문제점 지적
- 2009. 10. 전문기관 위탁발급, 보안성 강화 등 외국인등록증 개선 추진계획 수립
- 2011. 01.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 신설 및 ○○○○ 발급 위탁
- 2018. 01. 보안요소를 개선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외국인등록증 수요 파악 및 예산편성 → 외국인등록증 신청 → 발급수수료 납부 → 등록증 인쇄 의뢰(조폐공사) → 등록증 인쇄 → 외국인등록 교부 → 발급비용 지출

사 업 명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5
명칭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4,632	24,608	24,608	30,410	30,410	5,802	23.6

4. 사업목적

- 출입국관리, 외국인 체류관리 및 국적·난민업무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업무 포털시스템 등 운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
- 출입국·이민행정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 「출입국관리법」

○ 추진경위

- 각 세부사업별 분산되어 있는 출입국관련 정보화사업 예산의 통합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노후 심사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수요파악 → 예산확보 및 편성 → 소속기관 정보화예산 계약 → 사업수행 관리감독 및 검사 → 예산집행 → 결산

사 업 명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외국인보호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외국인보호관리	20,976	22,287	22,287	21,372	21,372	△915	△4.1

4. 사업목적

- 단속 등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급식 · 피복 · 의료관리 등 적정 처우 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 추진경위

-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퇴거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계획 수립(출입국관리법 제46조) → 불법고용주 및 외국인 단속(출입국관리법 제18조,21조,47조,81조)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실 및 보호소 수용(출입국관리법 제51조,63조) → 강제출국조치(출입국관리법 제46조)

사 업 명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외국인사회통합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3,274	15,427	15,427	17,639	17,639	2,212	14.3

4. 사업목적

-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제21조(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세계인의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등)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 난민법 제6조~제45조(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통역, 난민위원회 설치·운영,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생계비 지원, 재정착난민 수용 등)

○ 추진경위

- '07. 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 ‘09. 7. 결혼이민자 대상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 ‘12. 10. 외국국적동포 대상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실시
- ‘13. 7. 난민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기관 선정 방법 : 공모)	정액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7. 사업 집행절차

▪ 사회통합 계획수립 → 각 기관별 세부계획수립 → 각 기관별 재한외국인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실시 → 결과보고 → 사업별 분석

사 업 명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12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4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510	10,754	10,754	13,909	13,909	3,155	29.3

4. 사업목적

- 외국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어·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향후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 추진경위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민간위탁(사회통합프로그램)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계획 수립 → 이수제 운영기관 신청(사업계획제출) → 이수제 운영기관 선정 → 이수제 교육 신청 → 이수제 운영기관 교육대상자 소양평가 → 교육대상자 교육반 편성 → 교육실시 → 평가 → 국적취득 → 이수제 실적 보고서 분석 및 평가

사 업 명
검찰청시설운영(13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0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검찰청시설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검찰청시설운영	80,975	82,041	82,041	82,703	82,703	662	0.8

4. 사업목적

ㅇ 전국 67개 검찰청 시설의 운용 및 유지 관리

ㅇ 체계화된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사 보안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ㅇ 추진경위

- 검찰청 시설운영과 관련된 청사유지 및 관리경비

- 2007년 프로그램 예산구조로 개편 시 기본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변경

6. 주요내용

-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ㅇ 사업기간 : 계속
-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ㅇ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1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검찰국외훈련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582	7,924	7,924	7,957	7,957	33	0.4

4. 사업목적

○ 선진 각국의 법률제도·형사정책 연구 및 검찰제도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위한 검사 및 수사관 국외훈련

○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 조약체결 교섭

○ 외국 수사기관과의 기관 간 협력협정 및 친선교류

○ 국제회의 및 국제형사재판소 참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757호)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9호)
-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 국가수형자이송법 및 유럽수형자이송협약 등

ㅇ추진경위

-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필요성 증대
- 법무·검찰의 국제업무 수요 증가
- 검찰공무원이 참석해야 할 국제협상, 국제회의 수요 증가

6. 주요내용

ㅇ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사업기간 : 계속
ㅇ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사업 수혜자 : 국민
ㅇ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검찰국외훈련
  · 검찰해외연수 계획수립→ 연수희망자 선발→ 파견명령→ 연수보고서 제출
- 국제형사협력
  · 외교통상부로부터 조약체결의뢰 및 국제회의 참가요청 접수→ 조약체결 타당성·국제회의 참가 타당성 검토→ 예산검토→ 외교통상부에 조약협상회담, 국제회의 참가승인 및 대표단 선정통보 → 사업시행

사 업 명
과학수사인프라 구축(13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2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과학수사인프라구축	8,797	11,021	11,021	12,097	12,097	1,076	9.8

4. 사업목적

○ 영상녹화 조사를 통한 수사과정의 투명화·과학화로 인권존중의 선진 수사시스템 구현
○ 각종 감정·감식관련 첨단 장비도입 및 기법 개발, 전문요원 확충으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
○ 강력사범 검거율 제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이버범죄 대응 전담인력 운영 및 체계화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추진경위

- 2007. 6.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녹화조사팀 구성, 영상녹화조사 관련 증거방법 다양화 연구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 집무규칙 개정 및 영상녹화 지침마련
- 2015. 2.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과학수사장비 도입 및 배정
- 대검 감정·감식실에서 사용할 감정·감식장비 및 일선 청에 배정할 과학수사장비에 대하여 소요량 파악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매 진행 후 배정

○ 강력범 검거율 제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유전자감식정보 DB 구축 등

사 업 명
국제형사협력 지원(ODA)(133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3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국제형사협력 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492	2,701	2,701	2,509	2,509	△192	△7.1

4. 사업목적

○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국제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통한 수원국의 마약 통제역량 강화 및 국제공조 강화

○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 및 UNCCPCJ(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부담금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추진경위

- 수원국의 마약퇴치 지원사업 요청 → 수원국과 업무협의 → 수원국으로 마약 감식 및 수사 장비 지원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6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5,645	25,457	25,457	19,187	19,187	△6,270	△24.6

4. 사업목적

○ 인권감독, 양성평등, 감찰활동 강화 지원을 통한 인권보호 확대 및 검찰 신뢰도 제고

○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인력 운영 및 전문분야 교육·연구활동 지원

○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검사, 수사관으로 선발하기 위한 심층 실무학습 및 선발절차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법원조직법, 동법 시행규칙

○ 추진경위

- 기본적인 형사정책 수립, 형사법령정비 등 검찰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활동을 위해 2004년부터 검찰해외연수 및 수사지도 세세항을 검찰해외연수와 검찰수사지도 사업으로 분리 시행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은 감찰·인권·직무역량 강화 등 검찰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맞추어 사업명을 '검찰수사지원'에서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으로 변경, 단위사업 또한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에서 「검찰운영」으로 과목구조개편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133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7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	-	1,800	1,800	2,400	2,400	600	33.3

4. 사업목적

○ 급격한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범죄의 지능화·대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과학수사의 차세대 역량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인권보호 및 형사사법체계의 건전성 제고

○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범죄의 지능화·대형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인권보호 및 형사사법체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학수사역량 확보,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 및 첨단분석과학기법/장비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여, 시대 변화에 적합한 검찰

업무 환경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6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6
-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추진경위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획(2018. 9.)
- 대검찰청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관련 과학수사부 자문회의 2회 개최(4/12, 4/30)

※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과제 내.외부 수요조사(내부 13건, 연구진 제안 1건, 외부 60건 중 내부 심사 결과 채택된 8건)를 거쳐 최종 3개 내역사업 14개 과제를 2019. 4. 30. 과학수사부 자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다만, 외부수요조사는 과학수사 관련 대학(원)생 중심의 수요조사 과정으로 선정된 과제단위에서 포섭하는 안으로 확정하여 연구 개발 투자 우선순위 설정

- 대검찰청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용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4. 12)을 통해 기획 보고서 작성 및 연구 수행
- 법과학 분야 R&D사업 신설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R&D 예산 요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자문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국회 사업설명
- 2021년도 '형사사법증거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정(2020. 12.)
-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2020. 12.)
- 법과학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연구(2021.12.)
- 검찰의 Forensic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획연구(2022. 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4~2027
- 사업규모 : 2,150백만원/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1334-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500
명칭	검찰활동	검찰업무정보화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0,811	36,839	36,839	33,339	33,339	△3,500	△9.5

4. 사업목적

○ 검찰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지원

○ 검찰정보화 인프라 개선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검찰 정보보안 강화 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5376호)
- 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15369호)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4839호)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37호)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13호)

○ 추진경위

- 1985. ~ 1999. 사건사무 등 검찰업무전산화 사업 추진
- 2000. 수사정보, 전자결재시스템 등 구축
- 2003.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전자 민원시스템 등 구축
- 20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12.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 2016.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추진
- 2017. 검찰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시스템 구축
- 2020.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202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양형시스템 개선 등
- 202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고도화 등
- 2023. 검찰 전자결재시스템 재구축, 업무포털시스템 호환성 확보 및 이관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타당성 검토 → 조달청 계약의뢰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사 업 명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1333-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1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9,524	10,419	10,419	9,861	9,861	△558	△5.4

4. 사업목적

○ 범죄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기법 연구 및 증거물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 저장 방식의 다양화, 저장 용량의 대형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디지털 증거의 효율적인 도출·분석과 증거의 엄정한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개선 및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연구·개발

○ 첨단화·지능화되는 사이버테러, 해킹, 개인정보 도용 등 각종 사이버범죄에 능동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수사(지원) 기구 및 인력 인프라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추진경위

- 1996. 7. 1.자 '개정형법' 시행에 따라 2개청(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전담수사반 설치
- 2015. 2. 대검 과학수사부 출범
- 2015. 12. 자체 개발 모바일포렌식도구 배포
- 2016. GPU 기반의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구축
- 2016. '사이버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사이버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지원 시스템 개발
- 2020. 주요포털이메일 압수도구(eFA) 개발
- 2020. '클라우드 기반의 IoT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방법' 특허 등록
- 2020. 전국청 불법동영상 유포차단·삭제지원 지속
- 2021. 가상화폐 추적도구 도입을 활용한 가상자산 부정거래 수사지원 및 범죄수익 환수 지원
- 2021. Vehicle AVN 동기화 데이터 수집 및 EDR 분석기법 연구
- 2022. 공개정보 수집 대상 확장 및 방법 다각화 연구, 스마트홈 시스템 모델링 및 획득 데이터 분류 연구
-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탐지시스템' 고도화
- 2023.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시스템(NDFaaS) 구축 완료 및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검찰청 사업 발주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 수행 → 사업완료

사 업 명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1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형사부 등 수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형사부 등 수사지원	85,223	86,475	86,475	47,838	47,838	△38,637	△44.7

4. 사업목적

○ 일반 형사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등에 대한 수사활동 지원

○ 검찰 수사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204호)

○ 추진경위

- 일반 형사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등 수사지원을 통한 국가 법질서 확립

6. 주요내용

ㅇ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사업기간 : 계속
ㅇ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사업 수혜자 : 국민
ㅇ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공공수사(133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2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공공수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공공수사	3,106	3,276	3,276	1,346	1,346	△1,930	△58.9

4. 사업목적

○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세력 및 불법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수사 활동 강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 선거사범, 국가안전위해사범, 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

○ 시대 변화에 상응한 공공수사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공직선거법(법률 제8423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법률 제8424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법률 제8364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8158호)
-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 등

○ 추진경위

- 선거사범의 엄정한 수사 및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공소유지
- 선거사범 수사의 공정성 확보로 편파시비 차단
- 노사분규의 합리적 대처로 선진 노사문화 구현
- 법집행의 노사 형평성 확립 및 노사분규 원인 제거
- 각종 지역·직역 단체의 불법집단행동 엄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3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2,474	14,644	14,644	9,918	9,918	△4,726	△32.3

4. 사업목적

○ 보이스피싱, 사행성게임장, 불법사금융 등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체계 구축

○ 조직폭력, 지능형·경제형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로 민생치안 확립을 통한 안정된 서민 생활 기반 조성

○ 특정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지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786호)

○ 추진경위
- 금융·증권범죄, 강력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국민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생활침해사범에 엄정 대응 필요성 증대
- 국민생활침해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합동수사단 등 구성·운영 필요
- 개인정보 침해범죄에 대해 선제적·체계적 수사 및 정보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지원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마약수사(1335-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4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마약수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마약수사	4,839	8,204	8,204	7,823	7,823	△381	△4.6

4. 사업목적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마약류 사범 및 공급조직 분쇄
○국제 마약수사 공조 강화로 마약류 밀수 원천 차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 등

○ 추진경위

- 1989. 2.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팀 신설 전국 10개 주요 공항·항만에 검찰 마약분실 설치·운영

- 1996. 11. 전국 검찰청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편성·운영, 지속적인 마약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체제 구축하여 공항·항만 마약류 집중 단속
- 2001. 4.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 전국 34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통합수사체제 전환
- 2009. 3. 공항, 항만 관한 거점청에 인력 재배치하여 전국 36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 2011. 5. 마약류공급국가(태국 등 11개국)와 MOU 체결하여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신설,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마약통제 역량강화 기여
- 2018. 1. 대규모 마약류 밀수 및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 위해 광역수사체계 전환, 6대 지검 위주의 인력 재배치로 수사역량 집중
- 2019. 8.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대량의 마약류 밀수 및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단속 주력 위한『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다크웹 전문수사팀』신설·운영, 전문수사체제 구축
- 2019.부터 태국 등 동남아시아발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을 태국·라오스 등지에 파견 및 태국 마약청 수사관을 파견 받아 국제공조 수사 실시 중
- 2021. 1.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중대 마약류 밀수범죄에 대해서 검찰 직접수사 가능함에 따라 국제공조 확대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주력
- 2023. 2.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4대(서울중앙, 인천, 부산, 광주)지검에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마약범죄 특별수사팀」출범
- 2023. 4.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全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 2023. 5.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 2023. 5.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 개최, 급증하는 마약범죄 대응방안 논의
- 2023. 5. 베트남의 공안부 마약통제국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수사장비 지원하여 베트남의 마약류 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양 국간 공조 체계 강화
- 2023. 5. 몽골 마약청에 마약류 적외선 분광기 등 마약 단속 특화 장비 지원, 몽골 마약관계관의 국내 초청 연수·현지에서의 마약퇴치 캠페인·워크숍 개최하여 인적 역량 강화 지원 등 몽골의 마약류 퇴치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 사전 차단 및 국제 공조 네트워크 강화
- 2023. 6.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 개최, 국방부, 해경, 국정원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 마약수사 전담인력 확대(840명→974명)
- 2023. 6. 전국 마약전담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개최하여 다크웹, 가상자산 등 전문수사기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검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제고
- 2023. 6. 마약류범죄 엄중 처벌을 위해 검찰의「마약류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시행
- 2023. 6. 대검 - 과기정통부 업무협의를 통해, 「다중 영상기반 마약사범 추적 및 검

거 위한 AI기술 개발」R&D 과제 제출·최종 확정

- 2023. 8.~12. 마약수사관 대상 가상화폐 추적 역량 강화 교육 총 3회 실시
- 2023. 10.~12. 태국 마약청 수사관을 대검 마약과에 파견받아, 태국발 마약류 밀수사건 관련 정보 공유, 양국 동시 수사 진행 등 실시간 공조체계 공고화
- 2023. 11. APICC 정기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공조 방안 강구, 주요 마약류 유입국가 마약 수사기관들과의 양자회의 개최를 통해 상호 수사정보 교환, 밀수범에 대한 추적단서 제공 등 협력방안 논의
- 2023. 11.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 미국, 아·태, 유럽 등 22개국,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 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성공적으로 개최
- 2023. 12.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재3차 회의 개최,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엄단, 클럽 등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MOU 협약) 강화
- 2024. 2. 국내 태국발 필로폰 1kg 밀수 한국인 피의자 1명, 태국 마약청(ONCB) 파견 검찰수사관이 태국 내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 국내로 강제송환
- 2024. 2.~4. 주한태국·베트남·싱가포르 대사관 측과 각 간담회를 통해 국내 마약범죄 현황 공유 및 각국 자국민 대상 마약범죄 예방홍보 요청
- 2024. 2. 전국 마약수사관 간담회 개최하여 최신 마약수사 기법, 우수 수사사례 공유 등
- 2024. 3. 제67차 UN 마약위원회(CND) 및 고위급 회의 참석, 대검 마·조부장 한국대표단 수석대표 역임 및 기조발언·자발적 공약 선언(오스트리아)
- 2024. 3.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안건 최종 의결('24. 7. 시행)
- 2024. 4. 검찰수사관 1명 태국 마약청 파견 실시(6개월)
- 2024. 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
- 2024. 5. 국내 캄보디아발 필로폰 4kg 밀수 등 한국인 피의자 1명, 베트남 다낭서 소재 파악하여 베트남 공안, 이민국 및 주다낭총영사관과 공조하여 국내로 송환
- 2024. 5.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수사국(NCID) 대상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야간감시장비 등 수사장비 총 11종 인도
- 2024. 6.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 2024. 7. DEA 한국지국 부지국장과 간담회를 통해 한-멕 직항 노선 재개에 따른 국내 멕시코발 마약류 밀수 대응을 위한 신속한 정보공유 체제 확립
- 2024. 7.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과 간담회를 통해 효과적인 마약범조 leksthr alc 예방을 위해 서울시 소속 각 자치구별 CCTV 영상정보를 마약수사에 적극 활용 방안 협의
- 2024. 7.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간담회를 통해 해외 마약 밀반입 합동 대응체제 구축

6. 주요내용

ㅇ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사업기간 : 계속

ㅇ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사업 수혜자 : 국민

ㅇ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마약류 없는 사회건설」 및 「국제적 마약퇴치·협력 모범국가」달성을 위하여 ①마약류공급 강력차단 ②마약류수요 철저감축 ③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국제적 협력체제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집행

사 업 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1335-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5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4,244	3,481	3,481	2,760	2,760	△721	△20.7

4. 사업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총력 수사체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추진경위

- 성폭력 전담검사 T/F 구성 등 검찰의 우수 인력을 성폭력 분야에 배치하여 전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TF 운영을 통해 양형기준 정비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

- 아동 ·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 처리기준」 개정 · 시행('15. 12.)
- '17. 5. ~ '17.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편 등 TF 운영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수사 지침 및 절차 방안 연구, 성폭력 사건 수사매뉴얼 재정비
- '17. 11.「소년범죄 대책 TF」 운영('17. 11. ~ '18. 4.)을 통해 소년 형사사법체계 및 소년사건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방안 등 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상반기 검사 인사 후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관련범죄 전담검사 지정 점검 및 관련 업무 매뉴얼(업무지침 등) 송부('20. 2.)
- 일선 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20. 3.)
- 일선 청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지시('20. 3.)
- 성착취 영상물 관련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른 사건 엄정 대응 지시('20. 4.)
- 성매매알선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 개정('20. 6.)
- 하반기 검사 인사 후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관련범죄 전담검사 지정 점검 및 관련 매뉴얼(업무지침 등) 송부('20. 6.)
- 변화하는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선을 위한 전담TF 활동('20. 10. ~ 11.)
- 전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21. 2.)
-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송부('21. 2.)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알림 및 철저 준수 지시('21. 2.)
- 2021년도 상반기 저년차검사 여성·아동분야 역량강화 교육 실시('21. 3.)
-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송부('21. 7.)
- 성폭력·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 및 아동학대 수사매뉴얼을 제정을 위한 TF 운영('21. 7. ~ 11.)
- 2021년도 하반기 저년차검사 여성·아동분야 역량강화 교육 실시('21. 10.)
- 전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21. 11.)
- 전국 검찰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21. 11.)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수사매뉴얼 책자 배포('21. 12.)
- 일선 청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21. 3. ~ 11.)
- 일선 청 장애인전용 조사실 설치 및 보조기구 설치('22. 3. ~ 11.)
- 우수 사례공유, 제도개선, 유관기관 협력 강화, 검사 전문화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소년전담검사 워크숍」개최('22. 7.)
- 소년업무 전문화 강화 및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송화숙 전 서울소년원장 초빙강연회 개최('22. 8.)
- 효율적 선도방안 모색을 위해 전국 지검 소년전담검사 대상으로 서울가정법원 및 소년위탁보호기관 방문프로그램 실시('22. 9.)
-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례 연구집 제작 및 배포('22. 12.)
- 범죄피해자지원 Q&A 및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22. 12.)
- 피해자 보호 및 아동학대사건의 적정처리를 위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연중수시)
- 일선 학교 학생 등 대상 법교육 출장 강연 및 현장 의견 수렴(연중수시)
- 법무연수원 여성·아동대상 범죄 수사실무 등 전문화 교육 실시(연중수시)

6. 주요내용

ㅇ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사업기간 : 계속
ㅇ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사업 수혜자 : 국민
ㅇ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133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6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6,263	6,252	6,252	4,858	4,858	△1,394	△22.3

4. 사업목적

○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사 강화

○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비리 척결을 통한 투명성 구축

○ 방위산업 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범죄 수사 및 유관기관 협력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추진경위

-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상시적·전국적 수사 전개하고, 범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여 부패행위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

- 반부패수사 전문인력 양성, 회계분석팀, 자금추적팀 등을 일선청 수사지원 및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수사역량 강화
-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 건의하여 부패 유발 원인 차단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확립을 통한 합동수사 실시 등 부패사범에 적극 대응

6. 주요내용

ㅇ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사업기간 : 계속
ㅇ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사업 수혜자 : 국민
ㅇ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공판활동지원(1337-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0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공판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공판활동지원	2,551	2,037	2,037	1,265	1,265	△772	△37.9

4. 사업목적

○ 형사재판의 공소유지 지원 및 공판검사 역량강화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적극 대응

○ 새로운 양형기준에 상응·조화되는 검찰 사건처리 기준 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2008. 1. 1.부터 시행)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추진경위

-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적극적 대응
-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토대 구축
- 2022.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공소유지 활동의 중요성 증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1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7,379	7,262	7,262	6,648	6,648	△614	△8.5

4. 사업목적

○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자유형·재산형 미집행자 추적 검거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 재산형 집행으로 국가 세입 증대 기여

○ 부패범죄, 마약·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범죄자의 은닉 재산 자금 추적, 재산 파악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검찰징수사무규칙(법무부령)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 추진경위

-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자유형 미집행자 추적 및 검거능력 강화
- 국가 형벌권 집행을 통한 재산형 집행으로 국가 세입 증대
- 범죄수익환수반 운영 강화
- 2006. 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수익환수전담반 출범
- 2010. 7.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 전국 청 오픈
- 2014.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징금 집행 강화 방안 수립·시행
- 2015. 12. KICS 외국인 신원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 2017. 1. 사회봉사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 정립
- 2017. 2. 노역장유치 집행대상자 신병관리 철저 재지시
- 2017. 7.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확대 시행
- 2017. 12. 벌과금 집행유예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지시
- 2018. 1.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및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 2020. 1. 벌과금미납자 검거·호송 전용차량 배정 및 지급
- 2018. 5. 환자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시행
- 2018. 6.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
- 2019.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시행(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 추가)
- 2019. 8.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 시행(피해재산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
- 2019. 12. 국가전광판을 활용한 범죄수익환수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 2020. 1. 제31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최종 상호평가 총회 참석
- 2020. 4.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적극 청구 지시
- 2020. 7.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 2020. 12. 벌과금미납자 검거·호송 전용차량 추가 배정 및 지급
- 2020. 12.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2차 고도화 사업 완료
- 2021. 4.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 2021. 7.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시범 운영(수원·대구지검)
- 2021. 8.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신청기준 대폭 완화
- 2021. 8. 벌금 분납·납부연기 비대면 신청방식 도입
- 2021. 9. 벌과금 사회봉사 및 분납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부
- 2022.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시행[중대범죄 범위 확대(장기 3년 이상)]
- 2022. 6. 각급 검찰청 중형 선고 등 '주요 사건' 중심으로 자유형 미집행자 집중 검거기간 지정 및 검거활동 실시
- 2022. 9. 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제도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원 발의, 현재 법사위 심사 중
- 2022. 12.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를 위한 '불출석 피고인 검거 활성화 방안' 시행
- 2023. 2. 고액벌과금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및 지역별 거점 검찰청인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집행과에 고액벌과금 집행팀 신설
- 2023. 3. 자유형 집행 담당 수사관 현장대응력 강화 지원 예산 적극 사용 독려
- 2023. 3. '인권친화적 재산형집행절차 개선안' 시행, 형집행장 발부 전 소환절차 도입
- 2023. 3.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00만 원 이상 벌금, 과료 지명수배 입력 지시
- 2023. 3. 벌금미납자 검거 시 유의사항 전파
- 2023. 3. ~ 12. 대검 통합사무감사 시 집행과 감사관 주재 일선청 집행과 직원 간담회 개최
- 2023. 6. 벌과금 환급채권 강제집행 관련 유의사항 전달
- 2023. 6. 「자유형집행 업무 편람」 개정3판 배포
- 2023. 7. 미납자 요청에 따른 노역장유치집행 가능 여부 전파
- 2023. 7. 취소·실효된 벌금형 집행유예 본조정 결과 점검 지시
- 2023. 8. 유치집행 및 사회봉사집행 종결처리 누락 점검 지시
- 2023. 8.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화에 따른 조치사항 전파(형집행장이 발부된 모든 벌금, 과료 사건 지명수배 입력, 매월 3회 이상 검거활동 위한 현장출장 이행)
- 2023. 9.「가상자산 강제집행 매뉴얼」제작·일선청 배포, 법무연수원 재산형집행 실무 교육과정에 '가상자산 강제집행 실무' 과목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사보상(1337-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2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사보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형사보상	56,851	40,000	40,000	42,000	42,000	2,000	5.0

4. 사업목적

○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
-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ㅇ추진경위

- 1957년 형사보상법 제정으로 보상금 지급 개시
- 2008년 무죄비용 보상제도 도입
- 무죄판결·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적정 지급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 유지 및 증대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에게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선임료 등 보상

6. 주요내용

ㅇ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사업기간 : 계속

ㅇ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사업 수혜자 : 국민

ㅇ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사법정비(1338-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8	300
명칭	검찰활동	형사사법선진화	형사법정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형사법정비	237	349	349	349	349	-	-

4. 사업목적

○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형사법 개정

○ 법규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형벌 처벌 기준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2006.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형사실체법 정비과제 법무부 위임
- 2006. 8. 30. 대통령 지시사항(50개 핵심과제 등에 대하여 비전2030 추진지시)

○ 추진경위

- 디지털 압수수색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법 자문회의 개최('22. 1.)
- 구속·체포영장 집행시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대상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등 개정「형사소송법」공포·시행('22. 2.)
- 위헌결정된「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피해자 증거능력 특례조항 관련, 아동 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22. 6.)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도록 하는「특정범죄가중법」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22. 10.), 공포('22. 12.)
-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형사소송법」개정안 마련, 입법예고('22. 12.)
-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 및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년법」및「형법」개정안 제출('22. 12.)
-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확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스토킹처벌법」개정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진행 중('22. 10.~'23. 1.현재)
- 무고죄·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법정형 상향 검토 및 연구용역 수행
- 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주취범죄 양형분석, 엄정대응 방안 검토 및 연구용역 수행
- 「성폭력처벌법」개정안에 따른 전문조사관의 조사면담기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0
명칭	국제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정부부처등국제법무법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	381	381	516	516	135	35.4

4. 사업목적

○ 국제규범·분쟁 이슈 관련 정부부처 법률지원 기능 강화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시리즈 발간, 국내·외 법률설명회 개최 및 개별상담 등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현장 지원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 3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

○ 추진경위

- (추진배경) ’23. 8. 8.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 신설에 따라 국제규범 동향 파악 및 분석, 법률지원 등 업무 체계적 추진
- 2024. 1.~12. 국제협정(FTA・BIT) 관련 협상 참가 등 법률지원(총 25회)
- 2024. 1.~12.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자문위원 총 213명), 온·오프라인 법률자문 제공 (총 423건), 1:1 법률상담회 개최(14회),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설명회 개최(15회),「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등 자료 발간(4건)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3~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정부부처 주요 소송 등 지원,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수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국제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621	728	728	734	734	6	0.8

4. 사업목적

- ㅇ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등 국제규범의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규범의 통합을 선도하고, 성안된 국제규범의 연구 및 국내입법 반영을 통해 선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민·상사 법제 구축
- ㅇ FTA, BIT, RCEP 등 각종 통상협상에서 타 부처에 대한 법률지원 실시 및 법률서비스, 지식재산권 집행, 투자 분야 협상 직접 수행과 통상법 연구, 통상 전문 학술지 「통상법률」 발간을 통해 국가적 통상 역량 강화에 기여
- ㅇ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등으로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 추진
- ㅇ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등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하여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ㅇ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국제투자·비즈니스가이드」 발간, 국내외 법률설명회 개최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활동의 법률리스크 감소에 기여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각국 중앙당국과의 협력하에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국과의 법무협력협정 체결 등 국제교류로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외연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 추진경위

- 2024. 1.~1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등 국제규범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총 11회)
- 2024. 1.~12. 법무부-UNCITRAL 스페셜세션(10. 29.),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10. 30.)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주최
- 2024. 1.~12.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사건 아동반환지원
- 2024. 1.~12. FTA 등 통상협상 참가(총 25회) 및 지원 요청받은 법률 검토 의견 송부(총 32건)
- 2024. 1.~12.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제공(자문위원 213명, 온·오프라인 자문 총 423건)
- 2024. 1.~12.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총 10회 강의 진행, 수강인원 총 100명) 및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청년법조인 해외 파견 프로그램) 기획·운영(파견처 총 14개국, 16개 도시, 최대 34명)
- 2024. 1.~12.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10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2건)
- 2024. 1.~12. 법무부 영문잡지(3회) 및 정부부처 학술지「통상법률」(4회) 발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제거래규범 회의 및 FTA 등 각종 통상협상 참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업무 수행,「통상법률」·영문잡지 등 발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국제법무지원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UNCITRAL 규범 성안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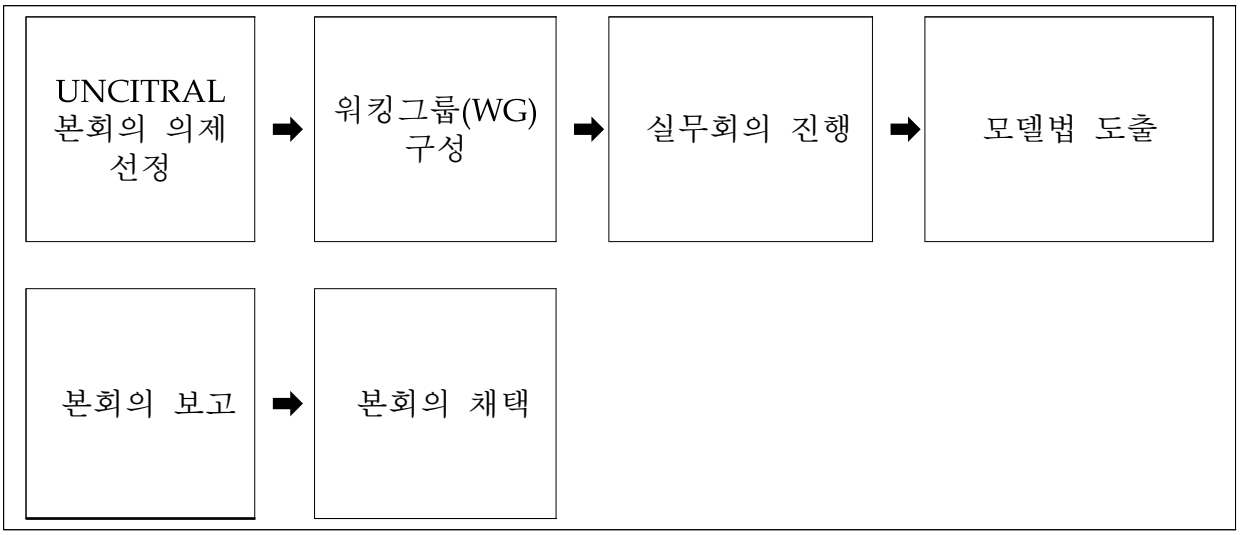

사 업 명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14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2
명칭	국제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23	158	158	150	150	△8	△5

4. 사업목적

○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필요성이 증대하고 법제 및 법제정비 노하우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전수요청이 증가한바 법제정비 지원을 통해 개도국 내 법치주의를 확립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대상 국가 교민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 환경 및 현지 진출 기반 조성

○ 법무한류(K-Law) 사업의 주무부서로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을 위한 기본적 연구 성과 축적 및 개발도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등), 제9조 제3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5조 제1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추진경위

- 2021.~25. 캄보디아 조정법제 정비사업 추진 중
- 2024. 3. 캄보디아 조정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완료
- 2024. 9.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NADR) 소속 조정인 및 사무국원 초청하여 단기 집중교육 실시하고,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급 초청하여 캄보디아의 조정 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 합의
- 2024. 11.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NADR)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현지 세미나 개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1~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수원국 법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및 결과 자료집 발간, 법제 정비 관련 컨퍼런스 개최(현지 연 1회, 초청 연 1회), 수원국의 관련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연 1회, 30명 규모), 수원국과의 MOU체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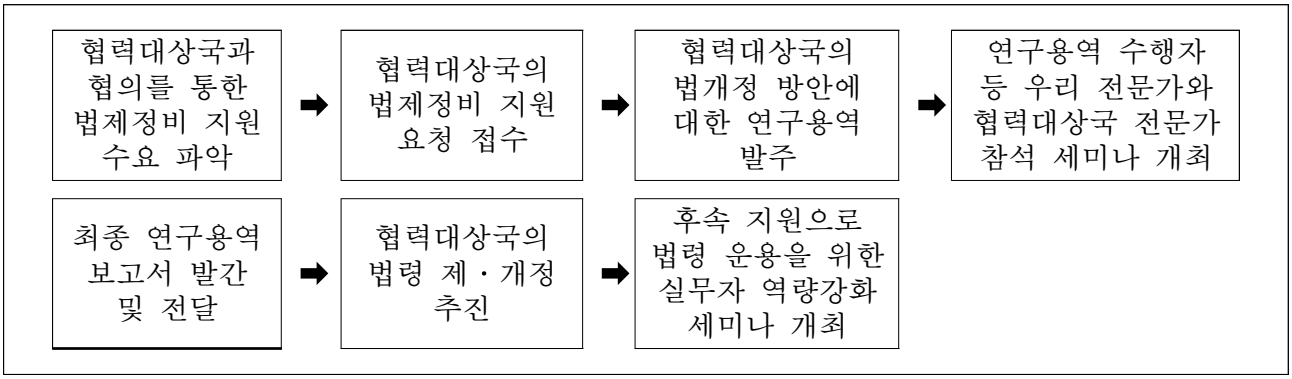

사 업 명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4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3
명칭	국제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5,472	5,275	5,275	4,717	4,717	△558	△10.6

4. 사업목적

○ 우리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수행 및 대응

○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회의 참석 및 정부의견 제출 등을 통한 ISDS 제도개선

○ ISDS 예방 교육 및 법률자문, 투자협정 협상 과정 참여를 통한 ISDS 사전 방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3항 제9호, 제9의2, 제9의3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추진경위
- 론스타, 쉰들러, 민봉진, 다야니2차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ISDS 중재 제기에 따른 절차별 대응
- ’19. 4.「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제정, ’20. 8. 법무부 내 전담 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23. 8. 국제법무국 신설 및 과 명칭 변경(국제투자분쟁과)에 따라 조약·계약 등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외국인 투자자 간에 발생한 투자 관련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활동 총괄 수행
- ‘23. 8. 국제법무국 신설 및 개정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법률 자문, 투자 협정 협상 및 관계부처 TF 회의 등 개최

6. 주요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국제법무지원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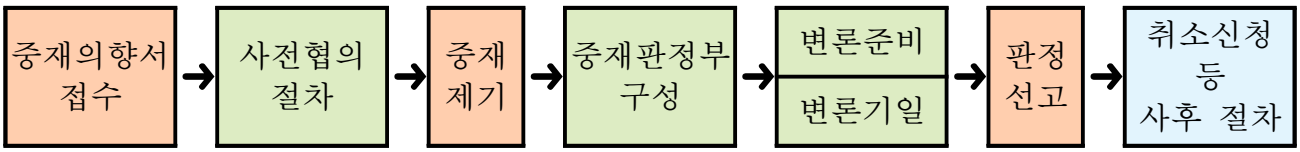

사 업 명
교도소행정지원 (15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도소행정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90%(소망교도소)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교도소행정지원	47,406	48,515	48,515	51,516	51,516	3,001	6.2

4. 사업목적

- (공무직 운영) 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복지비, 고용부담금 등 지원
- (직원근무 지원) 야근자 건강검진, 행사시설 임차, 여비(국내·외), 사업추진비 등 지원
- (민간시설 운영지원)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 (시설 지원) 과 사무실 설치 및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37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국제수형자이송법」

② 추진경위

- '04년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 및 교정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업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8개소, 민영교도소 1개소, 직장어린이집운영 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어린이집) 및 법정민간대행(민영교도소)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단법인 아가페	9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사 업 명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15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2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94,303	100,834	100,834	85,596	85,596	△15,238	△15.1

4. 사업목적

- (교정시설 유지 관리) 교정시설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환경설비 유지관리, 수용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
- (교정시설 개선 공사)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시설 현대화 관련 공사비 지원
- (교정시설 장비 개선) 교정시설 호송차량 구입, 방역장비 등 장비 개선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95년 노후 교정시설의 적정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교정시설 및 장비운용 사업 신설
- ‘07년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라 인력 중심의 교정시설 경비체계를 전자시스템을 통한 경비체계로 전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교정시설현대화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으로 통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	분기별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3월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법무부
3월-11월	확정 사업 등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3-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사 업 명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5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4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 운영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3,287	16,459	16,459	17,241	17,241	782	4.8

4. 사업목적

- (대체복무 운영비)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대체복무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대체복무 시설개선) 대체복무 시행을 위한 합숙시설 조성 및 기반공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대체복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복무 지원을 위해 '19년 사업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8개소
  ① 대체복무 운영기관 및 인원 ('23) 26개 1,377명 → ('24) 31개 1,612명
  ② '24년부터 대체복무 예비군 운영(소집인원 160명, 국방부 협의完)
  * ('24) 160명 → ('25) 700명 → ('26) 1,19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	
1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집행	교정기관

사 업 명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0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83,066	269,102	269,102	290,348	290,348	21,246	7.9

4. 사업목적

- (수용관리비)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 및 급식비, 피복비 등 직접비용 지원
- (공공요금 등 지원)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급양관리지침」,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수용자 급량, 피복, 보건의료 등 수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소자수용관리 사업 신설

- ‘04년 수용환경 개선 등에 따라 급증하는 공공요금 적정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으로 통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3-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사 업 명
교정교화 (15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1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교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교정교화	6,870	10,537	10,537	11,920	11,920	1,383	13.1

4. 사업목적

- '교정활동의 궁극적인 핵심사업'으로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를 목표로 시설 내 성폭력사범 및 마약사범 등에 대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 심리치료센터(정신질환사범, 성폭력, 아동학대사범 등), 분류센터(재범·폭력 고위험군), 혈액투석센터, 교화방송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 등 수용처우 전문센터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수용자 재범방지교육 강화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03년 사업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8개소, 심리치료센터 등 1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3-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사 업 명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1631 -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기관운영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2,592	15,568	15,568	17,373	17,373	1,805	11.6

4. 사업목적

○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의 시설 및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시설비, 청사 임차료 및 보증금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추진경위

- 소년보호기관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73.~74. 서울소년원 등 9개 소년원 공공직업훈련소 설치
  · 1977. 4. 서울소년감별소 신설(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1981. 1. 보호국 신설
  · 2007. 7.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6개 센터 설치
  · ~ 현재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관운영
- 치료감호소
  · 1987.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09. 1. 성폭력치료재활센터 개청
- 보호관찰소
  · 1989. 7. 전국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
  · ~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40개 보호관찰지소, 6개 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2개 등 총 65개 기관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97개 기관(보호관찰소 58, 위치추적관제센터 2,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18, 국립법무병원 1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수혜자 : 97개 기관(보호관찰소 58, 위치추적관제센터 2,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18, 국립법무병원 1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16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5
명칭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기관운영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	877	-	2,000	2,000	1,123	128.1

4. 사업목적

○ 점차 교묘해지는 재범시도를 사전 차단하고 전자감독 사각지대 재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중심의 예측적 전자감독시스템 개발 및 실증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정과제) 63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및 (실천과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관련법령)「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관련계획)「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사회안전분야)

○ 추진경위

- 범죄예방정책 분야 국가R&D사업 추진기획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22. 4. ~ 9.)
- 과기정통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1:1 매칭 사업추진('22. 11. ~)
-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사업' 공동 기획 및 예산 확보('22. 11. ~ '23. 12.)
- '24년 신규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24. 2. ~ 4.)
- '24년 신규 연구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24. 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41.5억원
  * **법무부·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全 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참여하며, **사업 소요 예산(283억원)의 50%씩 분담**
- 사업기간 : 2024~2027(4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법무부·과기정통부 공동 추진 → (관리) 한국연구재단 → (참여)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 내용
① 사업기획	법무부과기정통부	○사업 추진전략 및 사전 기획 보고서 작성
②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법무부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사업 세부 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 요구서(RFP) 포함
③ 과제신청·접수	법무부과기정통부 연구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연구재단 : 접수
④ 과제선정·평가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 결과 확정(과기정통부)
⑤ 협약체결	법무부과기정통부 연구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⑥ 진도관리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 점검 등)
⑦ 최종 검토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연구 결과 최종 검토(최종 평가 등)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 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소년원생수용(1632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소년원생수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소년원생수용	24,565	26,887	26,887	26,971	26,971	84	0.3

4. 사업목적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 이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으로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추진경위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58. 8. 소년원법 제정
- 1973.~74. 서울소년원 등 9개 소년원 공공직업훈련소 설치
- 1977. 4. 서울소년감별소 신설(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1981. 1. 보호국 신설(현, 범죄예방정책국)
- 2004. 1. 소년원법 개정(소년원 학교의 정규화)
- 2007.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소년원법」) 개정
- 2008. 6.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과정 신설
- ~ 현재 10개 소년원 및 1개 소년분류심사원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소년보호 11개 기관(소년원 10개, 분류심사원 1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소년원생, 청소년자립생활관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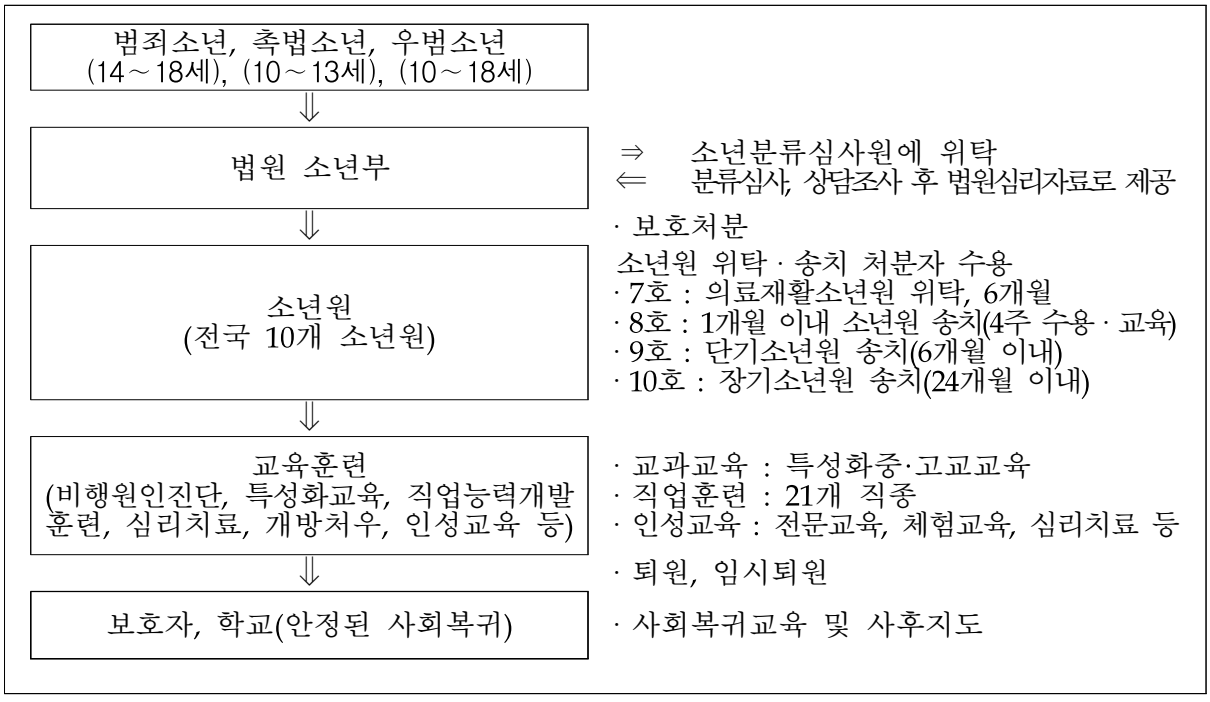

사 업 명
청소년비행예방(1632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1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청소년비행예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청소년비행예방	5,373	5,447	5,447	5,577	5,577	130	2.4

4. 사업목적

○ 일탈행동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재비행방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추진경위

- 2003. 7.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 보호소년상담조사제 : 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을 위하여 법원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

- 2007. 7. 부산, 광주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12. 6. 서울북부, 서울남부 등 4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3. 11. 순천, 전주, 춘천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4. 12. 수원, 부산동부, 울산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6. 5. 제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20. 9. 의정부,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1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비행초기청소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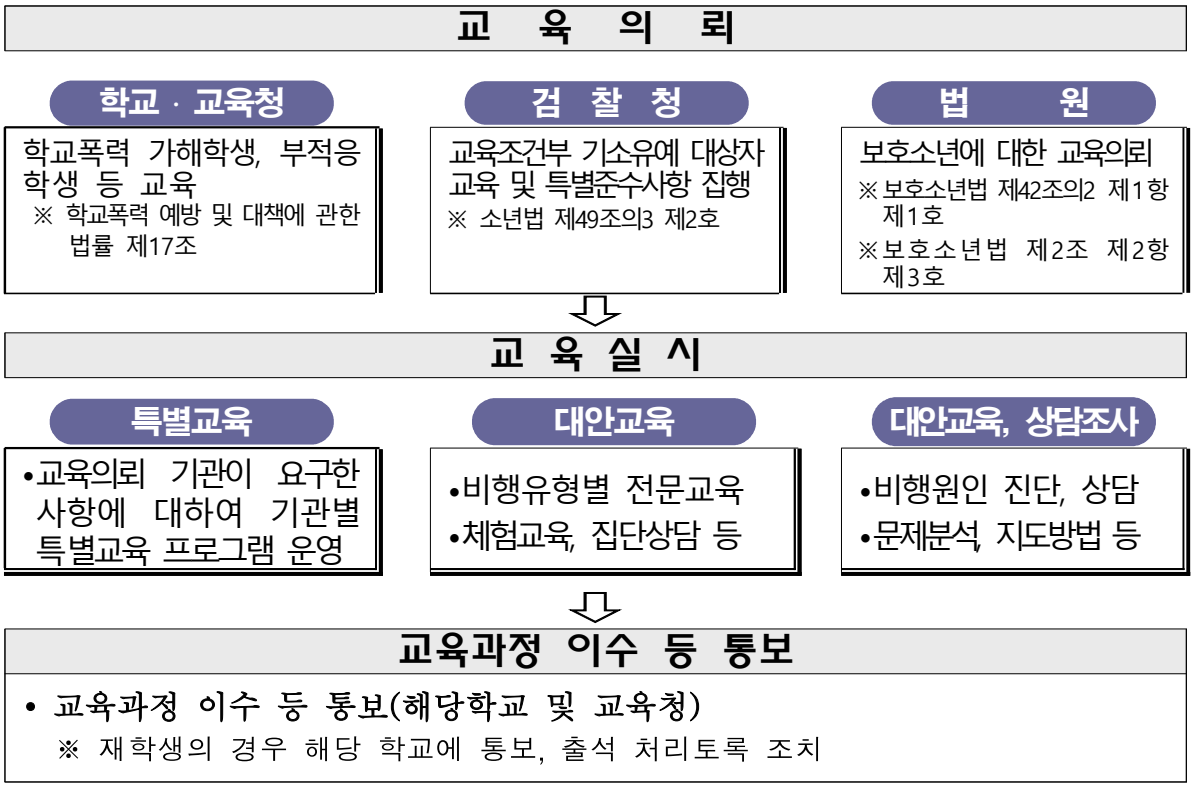

사 업 명
갱생보호활동(16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4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	갱생보호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갱생보호활동	44,503	48,124	48,124	46,856	46,856	△1,268	△2.6

4. 사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인 무의탁·무연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긴급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항(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제65조 제1항(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953. 3. 사)중앙사법보호협회 설립(법무부 공고 제25호)
- 1961. 9. 갱생보호회 설립(갱생보호법)
- 1995. 1.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009.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칭 변경
- 2016.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본부 경북 김천혁신도시 이전
- 2022.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 갱생보호법인 출소자 등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53년~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141,502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사업 수혜자 : 형사처분자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89.6% (수지차보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제94조

7. 사업 집행절차

▣ 법무부 감독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수행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호대책 수립 · 시행을 위한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실시
↓	
보호신청	· 본인의 신청 및 보호관찰소, 검찰, 교정기관 등의 보호의뢰
↓	

보호실시	보 호 방 법	
	숙식제공	생활관에서 무의탁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숙식 및 의복제공, 기초생활비 지원, 취업 및 생활지도, 사회성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자립유도 ※ 보호기간 : 최장 2년 범위 내 가능
	직업훈련	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영 또는 위탁교육 실시
	취업알선	지역사회 기업가 및 고용센터, 보호위원 등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의 취업 알선 및 근속취업 지도
	취업지원 (허그일자리)	취업 취약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와 고용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연하게 하는 종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
	창업지원	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 직종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주거지원	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가정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갱생 보호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국토부·LH공사 연계) ※ 지원기간 : 최장 10년 범위 내 가능
	긴급지원	질병, 실직, 장애 등 어려움에 처한 갱생보호대상자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취업교통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 지원
	멘토링 및 사후관리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직원 또는 보호위원 등이 면접 · 통신 ·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정 · 주거 · 교우관계 환경을 조정 · 개선 및 선행 · 장려
	가족희망 복 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 가정을 위해 취 · 창업지원, 자녀학습 멘토링 등 가족 단위의 통합지원 실시
	심리상담 및 치료	개인, 가족상담, 심리검사 등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 진행
	사 회 성 향상교육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행정절차, 약물남용 교육, 원예·미술치료 등 사회 적응력 향상 교육
	기타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의탁알선, 호적취적 및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대상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보호종료	· 자립한 사람, 보호기간 만료된 사람 등

○ 보호방법의 결정

- 지부장, 보호사업과장, 지부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보호심사회를 통해 보호결정

사 업 명
치료감호자수용관리(1634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치료감호자수용	치료감호자수용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1,521	12,680	12,680	12,581	12,581	△99	△0.8

4. 사업목적

○ 치료감호법에 의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 ·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1987.11. 치료감호소 개청
- 1993.11.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5. 8. 치료감호법 제정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09. 1. 성폭력치료재활센터 개청
- 2022. 7. 치료감호법 개정(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 2023.10.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완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립법무병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치료감호처분 대상자, 정신감정 의뢰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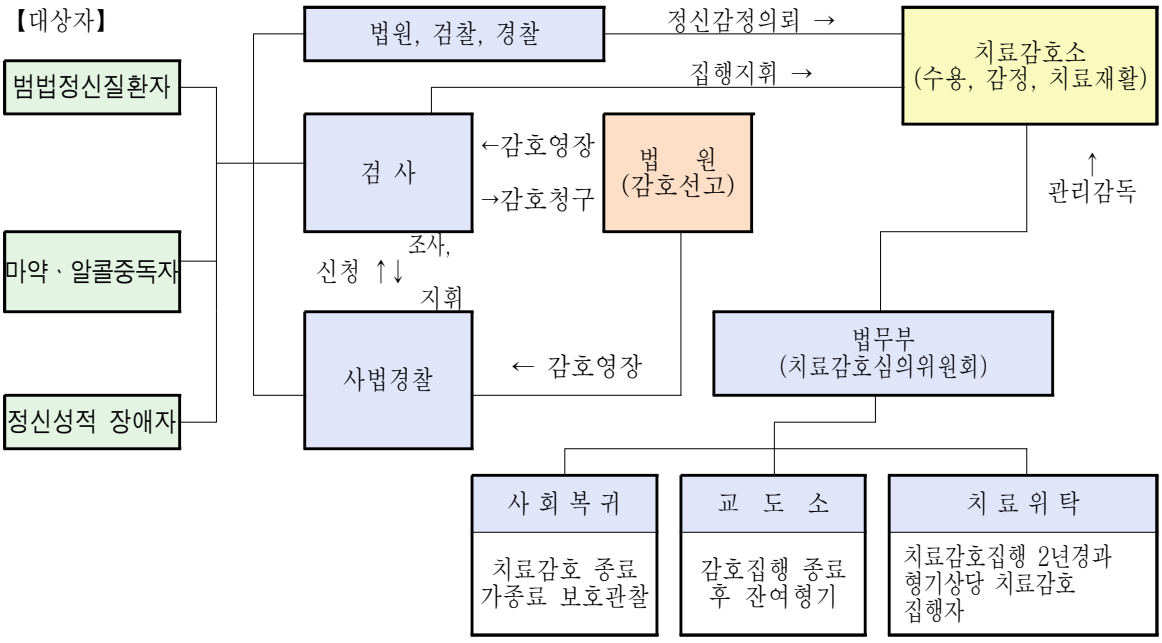

사 업 명
보호관찰활동(163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정책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보호관찰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보호관찰활동	13,986	16,114	16,114	17,102	17,102	988	6.1

4. 사업목적

○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법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 ‘89. 7. 1. 전국 보호관찰소・심사위원회 설치
- ‘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7. 1. 1. 성인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 ‘01. 1. 1. 보호관찰 기피자 지명수배제도 실시
- ‘04. 9. 22.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09. 9. 25.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실시
- ‘10. 5. 11. 사회봉사 농촌지원 실시(대통령 지시사항)
- ’10. 4. 1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시 이수명령 도입
- ‘13. 6. 19.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살인・성폭력・미성년자유괴・강도죄)실시
- ‘13. 6. 19. 성폭력사범 판결전 조사 확대 실시
- ’13. 6. 19. 성폭력 사범 수강(이수)명령 의무적 부과 및 부과시간 확대
- ’14. 1. 28. 아동학대 이수명령 도입
- ’14. 9. 29.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결정전조사 실시
- ‘16. 12. 2. 주취·정신질환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실시
- ‘18. 1. 7. 벌금형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시
- ‘18. 6. 13.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 보호관찰 실시
- ‘20. 1. 7.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 상한액 상향(300만원 →500만원)
- ‘21. 10. 21. 스토킹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22. 1. 2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제도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9년~계속

ㅇ 사업규모 : 58개 보호관찰기관
ㅇ 사업시행방법 : 집적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 사업 수혜자 : 보호관찰대상자 및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전자감독(163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4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1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전자감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전자감독	28,783	32,427	32,427	38,082	38,082	4,420	13.6

4. 사업목적

- ㅇ 성폭력 등 특정 범죄자, 보석 인용자 및 가석방자 중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 · 감독함으로써 재범 억제 도모
- ㅇ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기에 따라 10년에서 30년 간 등록 · 관리하여 성폭력범죄 예방에 기여
- ㅇ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재범 억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07. 4.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08. 5.「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08. 9. 1. 시행)
- ’08. 9. 박민식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발의
- ’10. 3.「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개정안 국회 통과(’10. 7. 16. 시행)
  ※ 법률개정으로 살인범 확대, 최근 3년간 소급적용, 부착기간 10년 → 30년 확대 실시
- ’10. 7.「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공포(’11. 7. 24 시행)
- ’11. 4.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제도 도입
- ’12. 11. 법명을「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개정안 국회 통과
- ’13. 6. 신상정보 등록 업무 법무부로 일원화(공개 · 고지 업무는 여가부로 일원화) 및 3년 이내(’08. 4. 16. ~ ’11. 4. 15.) 성폭력범죄자 소급 적용
- ’13.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제도’ 시행
- ’14. 6. 전자감독 부착 대상 강도죄 추가
- ’18. 1. 개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재심사 절차 마련,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살인·치사죄 등 추가
- ’18. 10. ‘일체형 전자발찌’ 본격 운영
- ’19. 4.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1:1 전담 보호관찰’ 시행
- ’20. 8. 일반 가석방 및 보석 허가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시행
- ’21. 6.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23. 10.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시행
- ’24. 01.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사업규모 : 58개 보호관찰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및 가석방자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후 24시간 이동경로 확인 등

▼

밀착 지도감독

① 처우계획 수립	② 전문 처우 프로그램	③ 사회정착 지원	④ 준수사항 위반 시 개입

▼

종료

위치추적 관제센터(2개)

중앙관제센터(서울동대문구)	대전관제센터 (대전 중구)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울산, 부산, 경남, 제주, 세종

보호관찰소(58개)		경찰
전담직원 · 현장방문 등 대면 지도감독 ·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 등	신속수사팀 · 고위험 경보발생 시 현장출동 ·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수사 실시	훼손 등 긴급상황 시 출동, 훼손자 검거 등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력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등본 접수	•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 등록
▼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 경찰서, 교정시설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제출서 등 확인 및 보완	• 관련 서류 정확성 검토, 자료 보완 (기한 내 미제출자 직권 등록)
▼	
등록정보 입력	• 성명, 주민번호,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성범죄 전과사실 등을 등록
▼	
열람 및 통지	•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거주지로 우편 발송
▼	
여성가족부 통보 (공개·고지 대상)	• 공개·고지에 필요 정보 여성가족부 전송
▼	
등록정보의 활용	•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등록정보 제공
▼	
등록정보의 폐기	• 등록기간 경과 시 등록정보 즉시 폐기

사 업 명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1636-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정책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6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7,229	6,271	6,271	6,277	6,277	6	0.1

4. 사업목적

○ 지역 네트워크인 법문화진흥센터와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활용한 민관공동 법질서실천운동을 실시, 부처가 협업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법질서 존중 분위기 확산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 청소년·일반시민 대상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보급, 온라인 법체험 포탈 '법사랑 사이버랜드',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대전·부산 솔로몬로파크' 운영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법교육 실시 및 법교육 인프라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교육지원법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법교육지원법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 법교육지원법 제6조(법교육 연구 개발)
- 법교육지원법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 법교육지원법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법교육지원법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추진경위

- ’07. 7.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문화진흥팀’ 신설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솔로몬 로파크)를 법교육 특화기관으로 지정·운영
- ’08. 2. 29.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실‘ 직제 신설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역량집중을 위해 6명으로 구성
- ’08. 3. 법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교육지원법’ 제정·시행
- ’10. 2. 24. 차관 직속 전담부서「법질서 선진화 기획단」발족
- ’11. 9. 1.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통합 발족
- ’15. 9. 7.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전면 개정판 발간
- ’15. 11. 9.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 ‘16. 7. 8.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
- ‘17. 6. 12. 찾아가는 법교육, 울릉도 학생·주민 대상 법체험 축제 개최
- ‘17. 7. 24. 하계 초·중등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 ‘17. 8. 24. 제8회 중학교 생활법 퀴즈대회 개최
- ‘18. 1. 9. ~ 1. 11. 정부부처 연계 자유학기 진로체험 페스티벌 참가
- ‘18. 4. 13.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956개교 모집 및 권역별 위크숍 19회 개최
- ‘19. 3. 27. 학생자치법교육 운영학교 464개교 모집
- ‘19. 4. 16. ~ 4. 26. 학생자치법교육 권역별 위크숍 5회 개최
- ‘19. 6. 7. 법체험 캠프 모집
- ‘19. 3. 6. 모두가 행복한 교실 운영학교 모집
- ‘19. 6. ~ 12.. 대전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체험전시물 개선공사
- ’19. 9. 광주 솔로몬로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2. 3. 광주솔로몬로파크 준공
- ’23. 2. 마약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
- ’22. 3. ~ 12.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전시체험물 조성
- ’23. 3. 1.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 ‘23. 9. ~ 12.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체험전시물 개선공사
- ’23. 2. 마약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사업규모 :

- 법체험 캠프 프로그램 개최
- 생활법 토론 및 동아리 캠프 개최
- 시민·어린이로스쿨, 법률콘서트 등 생활법 프로그램 운영
- 학생자치법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실 등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학생, 시민 등 다양한 대상의 법교육 강연 프로그램 운영
-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 법교육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등 개발·보급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 법질서 실천운동(민관공동 법질수 준수 캠페인)
- 솔로몬로파크 3개 기관(대전, 부산, 광주)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집적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ㅇ 사업 수혜자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구상	법교육 프로그램 구상 및 기획
↓	
검토	내부적 검토, 연구 (추진방향 및 참여 대상자 등에 대한 논의)
↓	
협의	관계 기관과 업무 협의(일정, 장소 및 대상자 선정 등) - 법교육지원법 제10조
↓	
계획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진행 계획 수립
↓	
실시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운영 (홍보, 신청자 모집, 선발, 진행)
↓	
평가	결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사 업 명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5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0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보조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4,583	5,032	5,032	5,437	5,437	405	8.0

4. 사업목적

- ㅇ 법무연수원 시설 유지관리 및 교육생 식당 직영 운영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생 만족도 및 교육효과 극대화
- ㅇ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

○ 추진경위

- '99. 7월 : 정부 구조 조정 시 시설관리 및 급식 등 민간위탁
- '01. : 급식관리 직영 전환
- '15. 3월 : 충북 혁신도시 기관 이전, 용인·진천 이원화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사업규모

- 공무직 근로자 총 82명
- 부지 834,425㎡, 건물 93,75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 검찰 · 유관기관 공무원, 법무연수원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꿈나래어린이집	정액보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37조

7. 사업 집행절차

- 법무연수원 예산 수요파악(전년도) → 예산확보 및 편성(전년도) → 예산집행(당해연도) → 결산(차년도)

사 업 명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642	1,605	1,605	1,577	1,577	△28	△1.7

4. 사업목적

- ㅇ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검찰 인재 양성
- ㅇ 직무 전문교육과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관·공직관 및 인권・양성평등・청렴 등 소양 교육 확대 실시
- ㅇ 검사 고위 및 중견관리자 과정, 검찰·보호·출입·교정 중간관리자 과정 등 법무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 신규 공무원에게는 기본소양 및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함양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2007년 상시학습제도 도입, 2008년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한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2009년 식품·환경·소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과정 및 2011년 국가송무 수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운영
- 2013년 행정안전부의 9급 신규자 공채 시험방식 변경, 하위직 신규자 기본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과정 확대 개편 추진
- 2018년 직무교육 체계를 개편, 신규임용자, 승진자 등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분야 교육은 목표중심 단기교육(타겟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효과 제고
- 2019년 사시출신 신임검사 교육 예산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 ~ 계속(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2013 ~ 계속(법무핵심리더 양성교육)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검찰, 유관기관 공무원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사 업 명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513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1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11	137	137	137	137	-	-

4. 사업목적

○ 양질의 급식제공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법무·검찰 공무원 외 교육생 만족도 제고 및 교육효과 극대화

○ 교육생에게 식비, 생활관 사용료(공공요금) 등으로 교육기간 및 숙박여부에 따라 징수된 교육비를 국고로 납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수입대체경비에서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ㅇ 추진경위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 경비로 지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1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ㅇ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 공무원 외 교육생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수요파악 및 예산편성 ⇒ 교육신청시 교육비 등 징수 및 국고납입 ⇒ 교육실시 ⇒ 교육비용 지출

사 업 명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513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12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1,180	1,008	1,008	1,008	1,008	-	-

※ 2019년도 예산안부터 사업명칭 변경

('18년)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교육 및 로스쿨 지원 → ('19년)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4. 사업목적

○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임관된 신임검사에 대한 교육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강의 등 지원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12.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신임검사 42명 임용(2013년 37명, 2014년 35명, 2015년 45명, 2016년 49명, 2017년 50명, 2018년 112명, 2019년 118명, 2020년 132명, 2021년 101명, 2022년 89명, 2023년 95명, 2024년 145명), 법무연수원에서 약 1년 내외 과정으로 교육 실시
-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국가적 과제로서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
- ‘16년 로스쿨지원 및 국제협력(5131-308), 로스쿨출신 신임검사교육(5131-312) 2개 사업을 로스쿨출신 신임검사교육 및 로스쿨지원(5131-312) 사업으로 통합
- ’18년부터 사시 출신 신임검사 교육체계가 개편되어 당초 상·하반기 총 2개월(전반기 5주+후반기 3주) 진행하던 교육이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 교육 중 전반 5개월간 통합교육 실시로 개편되어, 2018년부터 신임검사 통합교육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계속(로스쿨 지원 및 국제협력)
  2012 ~ 계속(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신임검사 및 로스쿨 재학생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사 업 명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70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532	608	608	608	608	-	-

4. 사업목적

- (변화관리교육)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능력 개발 및 변화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재도개선 추진)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 (자문단 운영)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기관장에 전달·소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05년 ~ 계속, 정부부처 공통 사업(주관:행정안전부)

② 추진경위

- '04년 정부 공통조직인 혁신(인사)기획관실 신설, 운영
-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인사위원회, '04. 10. 22.)
- 「2023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시행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 제안 요청 (행정안전부, '23. 4. 5.)
- 2023년 제안 활성화 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안내(행정안전부, '23. 4. 6.)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23. 6. 2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및 대검찰청
- 사업 수혜자 : 직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변화관리 교육

① 수요조사 → ② 연간 교육계획 수립 → ③ 교육과정별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 ④ 교육업체 선정 및 계약 → ⑤ 교육 실시

○ 제도개선 추진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과제 발굴(수시) → ③ 이행상황 점검·평가 → ④ 평가결과 활용, 공유 및 환류 → ⑤ 기관평가 반영 및 우수제안 포상)

○ 자문단 운영

① 운영계획 수립 → ② 자문단 구성 → ③ 자문단 운영

사 업 명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7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1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95	120	120	120	120	-	-

4. 사업목적

○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역량 강화 및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발굴·개선 등 고객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추진경위

- 2013. 3. 대통령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시 말씀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노력해 달라. 한 가지가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정책 민원 해결 효과가 나타남”
- 2013.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국무총리 승인, 안행부 시행)
- 2013. 6.~10.「법무부 국민행복 민원 피드백 강화 추진단」구성·운영
- 2013. 6.~10.「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피드백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2013. 12.「법무부 행복민원센터」출범
- 2024.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행안부 매년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

○ 사업규모 : 일반 국민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민원 친절도 점검 등
- 사업계획수립 → 계약체결 → 사업추진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

○ 민원현장점검 및 민원행정서비스 선진사례 자료 수집 등
- 사업계획수립 → 민원현장점검 및 선진사례 자료수집 → 결과분석

○ 기타 민원서류 접수·처리 등

사 업 명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70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3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10,487	17,993	17,993	20,107	20,107	2,114	11.7

4. 사업목적

-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등 법무부 각급 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및 청년인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23. 1, 관계부처 합동)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계속

- 사업규모 : ‘25년 사회복무요원 936명 (※ ‘24년 957명), 청년인턴 30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양성평등정책 지원 (7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양성평등정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양성평등정책지원	251	233	233	233	233	-	-

4. 사업목적

- 법무·검찰 조직 내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별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양성평등문화 정립
-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검찰 조직문화 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양성평등 기본이념),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② 추진경위

- 2012년도부터 '양성평등교육' 예산 확보하여 교육 실시

-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인식전환 교육 필요

※ 법무검찰의 성인지 교육 필요성 지적 등(2009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시)

- 성인지감수성 제고, 소통강화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도모

※ 경직된 조직문화와 소통부재가 법무검찰 조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법률신문 '12. 4. 3.)

- 법무검찰의 여성검사 · 공무원 증가에 따른 조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문화 정립 필요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5.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도 ~ 계속
- 사업규모 : 사업시작 후 검사, 법무·검찰공무원 등 매년 평균 3,900여명 교육 실시 (최근 3년 평균 4,900여명 교육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공무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7034-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5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정보화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40,858	39,117	-	41,485		2,368	6.1

4. 사업목적

-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능정보화사회 구현, 디지털혁신 중장기 과제 발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법무 정보 및 기반시설 보호·관리를 위한 스마트 법무행정 구현
-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와 내부행정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 및 국민의 편의성 제고
-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
- 법무부 주요 정보시스템(법무행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교정 등) 구축 및 운영·유지 관리
- 법무부 및 203개 소속기관 정보통신망, 전산장비 운영·유지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 「보호관찰법」,「보호소년법」,「형집행법」 등

□ 추진경위

- 1981. ~ : 각 실·국별로 독자적인 전산화 추진
  <출입국('81), 교정('88), 보호('91), 본부('95)>
- 2000. 3월 : 정보화추진체계 통합을 위한 정보화담당관 신설
- 2000. 12월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 1단계 :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2001년)
  · 2단계 : 지식정보화 토대 구축(2002년)
  · 3단계 : 지식기반 활용 정착(2003년)
- 2001. 12월 : 법무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 2003. 8월 : 법무정보화 로드맵 2007 수립
  ·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IT-KOREA)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을 로드맵 2007로 확대
- 2008. 5월 : 차세대 법무정보화 5개년(2008～2012) 계획 수립
  · 정보인프라확충, 대국민서비스개선, 정보보호체계획립 등 200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 2013. 12월 :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 전략(5개년 계획, 2014～2018)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디지털 법무 3.0), 법무정보개방, 빅데이터·신기술 등 5대 전략분야, 68개 정보화 과제 마련
- 2020. 9월 : 법무부 전자정부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법무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구현), 3대 추진전략 총 34개 과제 발굴·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법무부 및 소속기관 정보통신망 등 정보화기반 운영·유지관리
  · 법무부 주요 정보시스템(법무정보·사이버안전시스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교정정보시스템 등) 구축 및 운영관리
  · 법무부 및 소속기관 PC 등 전산장비 운영·유지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외국인, 법무부 및 소속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 → 조달계약 의뢰 → 조달공고 및 입찰 → 기술평가 및 협상 → 조달계약체결(조달청) → 사업추진 → 감리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

※ 근거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사 업 명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대변인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0
명칭	법무및검찰 행정지원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50	800	800	811	811	11	1.4

4. 사업목적

-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무정책을 정책 수혜자와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민 다수가 접근하기 쉽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법무정책의 시행 효과를 극대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2

② 추진경위

- 법무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마을변호사 등 다양한 법무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시행과 내용을 알리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 시행 사실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10년부터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들이 접하기 쉽고 알기 쉬운 홍보매체를 통해 법무부 시행 각종 서민지원 정책의 시행사실과 내용을 알려 보다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서민 등 사회적 약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7038-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8	300
명칭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	6,508	7,096	-	2,803	-	△4,293	△60.5

4. 사업목적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

○ (형사사법포털 운영) 사건관계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건진행정보,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통지서비스 등 온라인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의 운영・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2004. 05. 국정과제(전자정부사업) 선정
- 2005. 01. ~ 07. BPR/ISP사업 진행
- 2006. ~ 2007. 제1, 2차 사업 추진
- 2008. 01. 제3차 사업(합의사항 반영) 착수
  ※ 법원, KICS 운영주체와 법원시스템 구성방식 등 문제제기 ⇨ 3차사업 불합격, 4차사업 착수 지연 등 사업 지연
- 2008. 12. 『4개 기관 실·국장』, 합의서 채택
  ※ 시스템은 각 주관기관의 장이 독립적으로 운영・관리, 공통영역은 법무부에서 운영・관리
- 2009. 01. 기관간 의견이 조정된「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마련
- 2009. 03. ~ 09. 제4차 사업 추진
- 2009. 10. 제3차 사업 완료
- 2010. 0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10. 0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및 대국민포털 서비스 시작
- 2011. 01. 모바일 형사사법 안내 서비스 실시
- 2011. 09. 형사사법포털 외국어 서비스 실시
- 2012. 12.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실시
- 2013. 06.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 오픈
- 2013. 09.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오픈
- 2014. 05 ~ 11.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BPR/ISP 사업 실시
- 2015. 07 ~ 12.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실시
- 2016. 09 ~ 12.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실시
- 2017. 07. ~ 11.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 실시
- 2018. 05. ~ 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BPR/ISP 사업 실시
- 2019. 06.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 2020. 07.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통과)
- 2020. 08. 법무부 산하 '차세대 KICS 구축 준비 TF' 설립
- 2021. 04. 형사사법포털에 디지털원패스 도입하여 로그인 방식 확대 적용, 비밀번호 변경 알림 기능 추가로 보안성 확보
- 2021. 1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2024.10.20.)
- 2021. 1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개정(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 2022. 05. 고위공직자수사처 KICS 구축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망 구축
- 2022. 07. 형사사법포털(모바일,웹) 디자인 전면 개편 및 전자서명 공통기반(간편

인증) 적용으로 로그인 인증 방식 개선

- 2023. 06. ~ 08.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 2023. 08. ~ 11.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강화 솔루션 도입
- 2023. 10. 대한변호사협회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간 변호사 정보 연계 구축
- 2024. 5. ~ 12. 형사사법통계시스템 차세대 대응 개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238	8,308	7,362	6,641	7,09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수혜자

・국민 : 피의자(피고인),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

・관계기관 :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 해경, 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7038-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8	301
명칭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결산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9,697	29,722	-	20,751	-	△8,971	△30.2

4. 사업목적·내용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2021. 12. ~ 2024. 12.)**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에 따라 현 노후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025. 1. ~ 2029. 12.)**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형사사법포털 운영·관리, 2025. 1. ~ 2029. 12.)** 사건관계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건진행정보,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운영・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2005. ~ 2009.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 2010. 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 2018. 4.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공동 추진 합의
- 2018. 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수행
- 2019.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 2020. 7.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B/C 1.39)
- 2020. 8. 법무부 산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준비 TF' 설립
- 2021.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법사위 회부('21. 3.), 국회 본회의 통과('21. 9.)
- 2021. 7. 조달 발주 전 총사업비 협의(295,756백만 원)
- 2021. 1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4. 10. 시행 예정)
- 2021. 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 1단계 사업 수행
- 2022. 08.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단계 사업 종료
- 2023. 08.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단계 사업 종료 및 3단계 사업 진행
- 2024. 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 2025. 1.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87,886백만 원
- 사업기간 : ’21년~‘29년(시스템 구축 ’21년~’24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25년~’29년)
- 사업규모
  -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의 형사사법업무처리 지원(내부 사용자 수 약 16만명)
  -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일 평균 약 8만건 접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법무부, (참여기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형사사법기관,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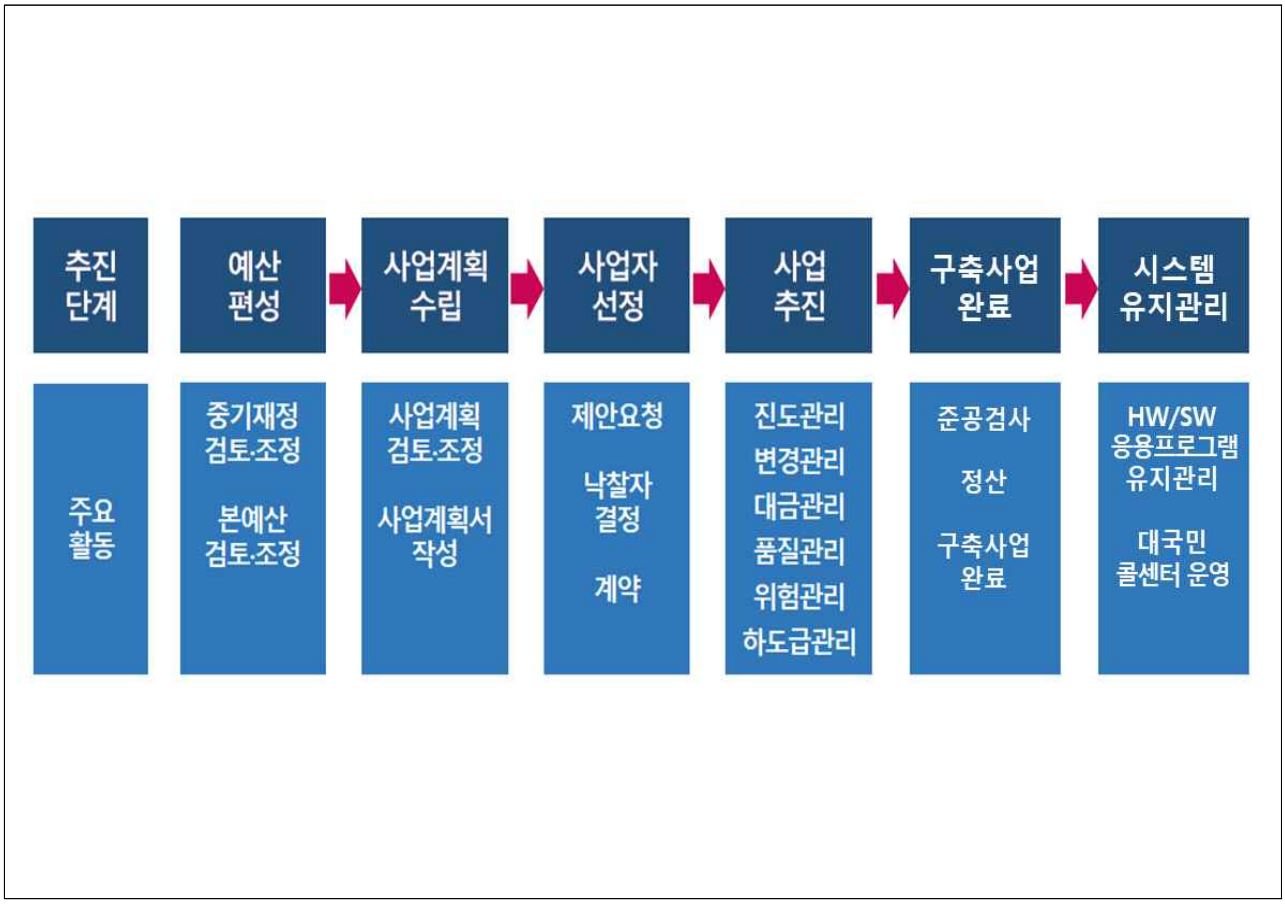

사 업 명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7039-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타법무시설조성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21,179	10,843	10,843	4,141	4,141	△6,702	△61.8

4. 사업목적

- 동 내역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해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수용시설 환경 개선으로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경위

- 2012년 일반회계였던 법무시설조성사업(1700) 예산이 '신·증축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은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편성됨
- 2013년부터 개보수 및 확충사업(1733-443)으로 통합·편성하여 사업추진

- 2017년부터 '본부 대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본 사업에 통합·편성
- 2019년부터 사업코드 7039-300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3 ~ 계속
- 사업규모 : 법무부 본부 및 268개 소속기관(검찰청,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 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계획수립 → 발주/계약 → 설계/공사 → 완료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1년</th><th colspan="4">2년</th><th colspan="4">3년</th><th rowspan="2">비 고</th></tr>
<tr><th>1Q</th><th>2Q</th><th>3Q</th><th>4Q</th><th>1Q</th><th>2Q</th><th>3Q</th><th>4Q</th><th>1Q</th><th>2Q</th><th>3Q</th><th>4Q</th></tr>
<tr><td>설 계</td><td>계획/계약</td><td colspan="3">기본설계 / 실시설계</td><td>설계도서 납품</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균 240일 이상</td></tr>
<tr><td>공 사</td><td></td><td></td><td></td><td></td><td>조달요청/계약</td><td>철거/기초공사</td><td>골조공사</td><td colspan="2">마감공사</td><td>입주</td><td></td><td></td><td>평균 1년 이상</td></tr>
<tr><td>감 리</td><td></td><td></td><td></td><td></td><td>조달요청/계약</td><td colspan="4">감리용역</td><td></td><td></td><td></td><td>공사기간과 비례</td></tr>
</table>

* 통상적인 리모델링 및 소규모 증축공사 소요 기간임

사 업 명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2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타법무시설조성	법무부 기록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법무부 기록관 운영	4,459	7,626	7,626	5,566	5,566	△2,060	△27.0

4. 사업목적·내용

○ 국가적·사회적, 업무 증거적 가치가 높은 법무기록의 독자적 보존·관리 및 활용·서비스 등을 위한 법무부 기록관 건립('24. 1월 준공)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도입 및 운영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5. 3. 법무부 기록물 일체 이관 보류 통보(국가기록원)
- 2015. 5. 법무부 기록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17. 3. 행정안전부 청사수급계획(18,031㎡) 반영
- 2017. 3. 보호 및 출입국 등 주요 기록물 자체 보관 지정 (국가기록원)
- 2018. 7. 비축부동산(신축부지) 관리전환 (기획재정부→법무부)
- 2018. 8. 기록관 신축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 사업 추진
- 2020. 12. 신축공사 착공
- 2024. 1. 법무부 기록관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년~계속
- 사업규모
  - 법무부 기록관(연면적 18,031㎡, 지상7층, 지하 1층) 내 보존환경 구축
  - 기록물 수용량 : ± 350만권(기록물 건수에 따라 수용량 증감)
  - 대량의 보존기간 30년이상 자체보관 기록물의 인수, 등록, 분류, 디지털화, M/F화, 서고관리, 장기 보존처리 등 법무부 기록관의 핵심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기자재 도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물품구매계획 수립	법무부	법무부 기록관의 보존장비 규격서 작성
⇩		
② 조달요청 접수	조달청	법무부 조달요청 접수
⇩		
③ 규격검토 및 예가산정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수렴
⇩		
④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입찰공고 등록
⇩		
④ 입찰	조달청	사업자 대상 입찰 진행
⇩		
⑤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기술·규격평가 등을 통하여 낙찰자 선정 및 전자계약 체결
⇩		
⑥ 계약이행	조달청	보존장비 납품 및 시공, 설치, 준공 수행
⇩		
⑦ 검사/검수 및 인수	법무부	보존장비 납품내역, 준공내역 검수
⇩		
⑧ 계약종결	조달청	대금지불 및 대금납입고지, 수납

Ⅱ. 교도작업특별회계

1. 세　　입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06	103	103	103	103	-	-

1.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세입 개요

○ 민영교도소 반환금 등 국고금 반환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수납액	190	120	120	106

교도소수입
63 - 63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교도소수입	67,902	64,343	64,343	64,343	64,343	-	-

1.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세입 개요

○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 판매 및 위탁작업 등 용역 제공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수납액	63,034	62,995	63,303	67,902

기타잡수입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잡수입	2,264	369	369	130	100	△269	△72.9

1.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작업부산물, 불용품 매각,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수납액	341	52	88	2,264

기금예탁원금회수
92 - 92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예탁원금회수	44,000	46,500	46,500	47,000	47,000	500	1.1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국고금 관리법」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국가재정법」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단기 예탁 후 원금회수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수납액	40,000	37,000	45,000	44,000

예탁이자수입
95 - 9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예탁이자수입	1,593	2,654	2,654	2,746	2,746	92	3.5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수납액	812	553	941	1,593

전년도세계잉여금
89 - 89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A
전년도 세계잉여금	8,349	6,560	6,560	9,833	9,388	2,828	43.1

1.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잉여금의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세입 개요

○ 전년도 세계잉여금(전년도 총세입액 - 전년도 총세출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수납액	13,884	11,018	7,614	8,349

2. 세 출

사 업 명
교도작업 (153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교도작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교도작업	55,899	58,651	58,651	62,105	62,105	3,454	5.9

4. 사업목적

- 정부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 작업장려금 지급 등 일련의 작업운영 지원
-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5조~제76조,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형집행법

제65조(작업의 부과)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3조(작업수입 등)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② 추진경위

-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시작
- 전국 교정시설내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으로 작업재료 구입, 작업직종 개발, 경제적 자립기반 자금인 작업장려금 지급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1일 2만여 명의 수형자가 교도작업 참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수주활동 →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접수 → 원가계산 → 작업명령 → 소요재료 불출 → 제품생산 → 제품운송 → 납품/작업장려금 계산고 관리 → 고지서 발부 → 징수

사 업 명
직업훈련 (153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1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직업훈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직업훈련	3,920	4,164	4,164	4,399	4,399	235	5.6

4. 사업목적

-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사업으로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
- 수형자 출소 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 형집행법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969년부터 전국 교도소에 노동부 인가 공공직업훈련교도소를 설치하여 수형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
- 추진배경 :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및 출소 후 재범방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35개 교정시설에서 14개 분야 210개 과정 5,943명 직업훈련 참여, 여성 및 장애인 특성화 전문직업훈련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직종, 인원 등 계획수립→ 법무부장관 승인→ 직업훈련 시설·장비확보→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실시 → 기술자격 검정응시 → 직업훈련 수료

사 업 명
시설보완 (153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2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시설보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시설보완	5,693	4,475	4,475	3,897	3,897	△578	△13.0

4. 사업목적

- 작업장 신·증축, 작업장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생산성 제고능력 배양
-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설, 개량,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도작업의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5조 내지 제76조

② 추진경위

-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수익금으로 작업시설 신·증축, 작업환경 개선, 최신 장비 설치 등 교도작업 발전기반 조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교도작업 작업장 신축·개축, 노후작업장 환경개선 및 최신 생산장비 교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7. 사업 집행절차

교도작업 실시기관 시설보완 청구 → 예산재배정 → 집행 → 노후장비 교체, 신규 설비 투자 등의 순환과정

사 업 명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8910-89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0	890
명칭	교정활동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47,000	52,640	52,640	52,627	52,627	△13	0.1

4. 사업목적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교도작업 운영자금 기간별 소요일정에 따른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7조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특별회계 여유 운영자금 활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안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특회계 효율적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국고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제출요청 → 법무부 직업훈련과 교도작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수립 제출 → 한국은행에 교특회계 여유자금 공자기금으로 예탁

Ⅲ.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수 입

기타 재산 이자 수입
54 - 54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1,540	417	417	730	730	313	75.1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기금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납액	152	99	550	1,540

변 상 금
57 - 57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B-A)	(B-A)/A
변상금	1,604	1,797	1,797	1,719	1,719	△78	△4.3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

2. 수입 개요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재산 등 강제환수 추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납액	1,903	1,499	2,053	1,604

기타 경상이전 수입
59 - 59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기타경상 이전수입	3,494	2,717	2,717	3,164	3,164	447	16.5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조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납액	2,200	3,168	2,830	3,494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5 - 85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1,500	46,002	46,002	50,502	50,502	4,500	9.8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제13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원금 중 일부를 기금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납액	4,700	4,800	9,900	31,500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B-A)	(B-A)/A
일반회계 전입금	94,200	86,121	86,121	88,762	88,762	2,641	3.1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2. 수입 개요

○ 해당연도 예상 벌금수납액의 8%를 바탕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산출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납액	82,440	106,054	94,200	94,200

2. 지 출

사 업 명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0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B-A)	(B-A)/A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7,115	21,099	21,099	21,442	21,442	343	1.6

4. 사업목적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타(법률구조안내, 현장정리,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돕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범죄의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 제공

○ 국가 위탁운영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강력범죄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임시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복구지원 등), 제34조(보조금의 교부)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산
2. 1년 이상의 사업운영 실적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간병비>

-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제공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
- '14년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지원

※ 생계비·치료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검찰청 사업으로 이관('15)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006. 11.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6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에 등록하여 활동 중임

※ 2008. 9.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전국적인 홍보 및 지원 등의 수행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업무를 담당

<스마일센터>

- 2009년 연구용역 결과,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스트레스장애환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고 정신질환자집단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확인

* 강력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김지영,박형민)

- 이에 따라, ’10. 7. 국가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치료 및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스마일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전국에 총 16개소 운영 중

〈원스톱솔루션센터〉

- 신변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회복까지 단계별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
- ’24. 7. 서울에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 마련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주요 강력범죄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를 지원하여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유족의 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 도모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작(’13.)하여 경찰청 직접수행(’16.)으로 변경

〈범죄피해 법률구조〉

-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으로 이관(’16. 1.)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 실시(대한법률구조공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61개 전국 피해자지원센터 및 16개 스마일센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검찰청,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약 10~1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스마일센터	10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및 제34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약 50% (신체상해 피해자의 변호사보수 지원)	법률구조법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운영비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	• 별지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 심의・검토	•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검토・심의 •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 및 반려
⇩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승인, 보조금 결정 및 교부, 통지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보조사업 수행	• 법령, 지침, 내부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
⇩	
정산	• 당해 연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제출 • 위 서류 및 증빙서류 등 통하여 검토・확인
⇩	
확정 및 결과 통지	• 정산(보조금 금액 확정) 및 결과 통지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차기 사업에 반영
⇩	
반납조치	• 정산잔액, 교부잔액, 이자 부분 반납 조치

나. 스마일센터 운영비 지원

다음연도 인건비 소요 제출(12.1.)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12.10.)	⇨ 사업계획서 검토(예산조정) (12월 하순)	⇨ 연간 예산 배정계획 수립 (12월~1월초)	⇨
센터별 확정예산 통보 (1월초)	⇨ 예산집행계획 보완 제출	⇨ 분기별 보조금 배정 및 정산보고	⇨ 연간 보조사업 집행결과 보고	

다.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지원

사건 발생 (피해자 신청 등)	사건담당부서 결정 (필요 시 署 청문 심사) 현장감식 진행	청소업체 연 계

라. 범죄피해자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지원(검찰청)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신청, 혹은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의 추천서 접수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의 자료 확인·보완 / 심의위원회 개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피해자에 결과 통보 /
치료비 지급 결정 시 재무계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인계(인용 시)

↓

치료비 지급(서류 인계일로부터 7일 이내) /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지급 사실 통보

↓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및
범죄피해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사실 통보

마. 범죄피해자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보조금 교부(법무부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지원 대상 추천(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연합회)

↓

간병비 및 부대비용 지원 심의 및 결정 절차

▣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병비 300만원 미만 신청시>

▶ 각 센터 자체심의 ⇨ 연합회 사무처 검토·지급 ⇨ 심의회 사후심의

<간병비 지원 누계 3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초과 신청시>

▶ 각 센터 자체심의 ⇨ 연합회 심의회 특별결의 ⇨ 연합회 지급

↓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법무부)

사 업 명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113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1
명칭	인권활동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B-A)	(B-A)/A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3,511	2,500	2,500	3,450	3,450	950	38.0

4. 사업목적

- 당사자 신청 또는 검사 직권에 의해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조기에 복구함으로써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제46조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

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⑤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4. 8. 26.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안' 의결
  ※ 종합대책안은 공익 민간법인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형사 화해·중재, 경제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방안 추진
- 2006. 4. 20. 대검찰청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서울남부, 대전지검, 부천지청에서 형사조정제도 시범실시
- 2007. 1. 1. 형사조정제도 전국청 자율적 확대 지시, 같은 해 8. 전국청 시행
- 2008. 9 ~ 10.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형사조정위원 450명 교육
- 2008. 11. 형사조정제도를 명문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09. 4. 및 11. 이화여대 등 대학과 연계하여 형사조정위원 553명 교육
- 2009. 11.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검찰 형사조정위원회로 조정 주체 이관
- 20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형사조정 근거규정 신설
- 2010. 4. 28 ~ 29.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2010. 8. 15.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개정 : 형사조정위원 제척·기피·회피제도 및 이의제도 신설 등
- 2011. 2. 18. 형사조정위원 교육 교재 및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
- 2011. 6. ~ 2013. 6.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6회, 515명)
- 2014. 1.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 전국적 시행
- 2014. 1. 형사조정 매뉴얼 제작, 배포
- 2014. 6.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책자 발간
- 2014. 6. 형사조정위원 집합교육 및 세미나 실시
- 2014. 10. 형사조정 조서 및 결정문 표준화 서식 마련(전국 청 시행)
- 2014. 12. 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
- 2015. 1. 민·형사의 통합적 해결 도모를 위한 공증제도 연계
- 2015. 10. ~ 11.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5회, 492명)
- 2016. 6. ~ 7. 고검 권역별 형사조정위원 집합교육 실시(465명)
- 2016. 9. 26. 대검찰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으로'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와 발전방안' 공동학술심포지엄 개최
- 2016. 12. 12. ~ 13. 형사조정기법 중심의 심화교육 실시(36명)
- 2016. 12. ~ 2017. 4. 형사조정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 2017. 4. '형사조정 조기 활용 확대 방안'시행 : 검찰 직수 고소사건 및 경찰 접수 고소사건, 노동청 접수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신속한 형사조정 활용 등
- 2017. 4. '제10회 IA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조정 제도 소개하며 롤모델로 전파

- 2017. 6. 1.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전문화를 위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개정, 유럽범죄피해자지원협회(VSE) 연례회의('17. 5.) 등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조정 제도 소개하며 국제적 롤모델로 전파
- 2017. 11. 고검 권역별로 기초 교육 실시, 2개 지검(서울중앙, 부산)에서 폭력 등 5개 전문분야 교육 실시(528명)
- 2017. 12. 관련 법률·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을 위한 실무 사례 등을 추가한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 및 2018. 11. 증보판 발간
- 2018. 11. 고검 권역별로 형사조정제도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및 전문분야 교육 실시 (543명)
- 2019. 02. '한국 형사조정 표준안' 검찰협력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의 표준모델로 채택

- 2019. 10. ~ 12.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전문화 교육 실시
- 2020. 03. KICS 피해자지원시스템 상 형사조정 관련 정보의 전산화(형사조정위원, 조정 횟수 등 관련 자료 입력, 수당 자동 계산 등 기능 개선)
- 2020. 8. ~ 12. 형사조정위원 대상 양성평등 온라인 교육 및 기초 교육 실시(805명)
- 2021. 11. ~ 12.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심화 교육 실시(660명)
- 2022. 5.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발간 및 배포, 형사조정 활성화 지시
- 2022. 11.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기초 교육 실시(549명)
- 2023. 10. ~ 11.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집합 교육 실시(548명)
- 2023. 12.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개발 교재(형사조정을 위한 핸드북) 발간 및 배포
- 2024. 4.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검찰청(형사조정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고소사건 분쟁당사자, 범죄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 ~ 46조

※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대검예규 제493호, 2009. 10. 29.) 제정하여, 그동안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시행해온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를 2009. 11. 10.부터 검찰청으로 이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이 위원장 및 위원 등 위촉

○ 집행절차

① 사건 회부	→	② 조정	→	③ 결정문 등 자료 송부	→	④ 처분
검사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 회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참여하에 조정 진행		조정이 종료되면 검사에게 형사조정결정문 등 자료 일체 송부		검사는 조정결과를 고려하여 처분

사 업 명
범죄피해구조금(113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2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구조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B-A)/A
범죄피해구조금	9,125	10,015	10,015	9,573	9,573	△442	△4.4

4. 사업목적

○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

※ 범죄피해구조금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7조, 제16조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제40조

② 추진경위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으로 구조금 지급 개시('87.)
-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05. 12. 29.)
  · 구조요건 완화→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사유」 삭제
-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 법률안 국회제출('08. 11. 28.)
  · 국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 법률을 「범죄피해자보호법」 하나의 법률로 통합
- 범죄피해자구조금 업무 검찰국 → 인권국 이관('09. 1.)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09. 4. 20.)
  · 유족구조금 :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상향
  · 장해구조금 : 300~600만원 ⇒ 600~3,000만원 상향
  · 장해구조대상 확대 1~3급 ⇒ 1~6급
-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10. 5. 14.)
  · 유족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5,400만원
  · 장해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4,500만원
  · 장해구조 대상 확대 1~6급 ⇒ 1~10급
  · 가해자불명, 무자력 요건 삭제, 중상해구조금 신설, 신청기간 연장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12. 6. 29.)
  ·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 중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던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배수 1/6을 곱하여 구조금 산정
    ⇒ 위 사람들 중 피해자의 보모, 자녀의 경우에는 3/6으로 배수 상향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0. 15.)
  · 친족간 범죄에도 구조금 '전부' 지급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2. 15.)
  · 구조금 지급액 상향 조정(평균노임 36개월 ⇒ 48개월, 33% 증가)
- 범죄피해자 권리 의무고지제도 시행('15. 4. 14.)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17. 12. 19.)
  · 장해등급을 '1~10급 → 1~14급'으로 확대
  · 중상해 구조금 중 중증의 정신질환의 기준을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 →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필요기간 2개월 이상 요건)로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지방검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신청→
→ 심의회 심의 → 구조금 지급
→ 기각
→ 기각 → 재심신청 →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구조금 심의 후, 지급·기각 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24조~제27조

사 업 명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6
명칭	인권활동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B-A)	(B-A)/A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2,521	3,446	3,446	5,540	5,540	2,094	60.8

4. 사업목적

-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장치 제공 △주거이전 지원 △임시숙소 지원 △민간경호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국가 본연의 책무 수행
- **(신변보호장치)** 추가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신고·위치전송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보호장치 제공,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자 보호
- **(이전비)** 보복범죄를 피해고자 거주지를 변경한 범죄피해자에게 이전비 지원
- **(임시안전숙소)** 가해자에게 주거지가 노출되어 추가피해 위험이 크지만 당장 거주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이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지정한 숙박업소에 임시거주 지원
- **(민간경호)** △가해자 체포·구속영장 기각 △흉기사용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지속 위반 등 특히 추가피해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검거 등 조치 시까지 단기간(기본 14일 이내 + 1회 연장 가능) 민간경비업체 밀착 경호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신변보호장치 · 이전비 지원

- 2011. 5. 30. '2012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및 확정
- 2012. 4. 16.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장치 및 이전비 지원지침 제정·시행

○ 임시안전숙소

- 2015. 강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임시숙소 지원(경찰청)
- 2024. 해양범죄피해자까지 임시숙소 지원 확대(해양경찰청)

○ 민간경호지원

- 2023. 6.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서울·인천·경기지역 시범운영 (경찰청 일반회계 7억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강력범죄 등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변보호장치

- (경찰) 기기 지급 → 112시스템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 긴급상황 시 보호 요청(기기 작동) → 상황실 접수 → 지령 및 실시간 위치확인 → 경찰 출동 → 안전 확보
- (검찰)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 및 희망의사 확인 ➪ 희망시 피해자지원담당관실로 안내 (관련서류 인계) ➪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에게 신청서 접수 및 담당검사 결재(전결) 받아 비상호출기 지급, 사용방법 설명

○ 이전비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다른 곳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단계	• 당해 사건을 수사중 또는 기소한 각 청 피해자지원담당자 – 피해자 등으로부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된 신청서 접수
지원단계	•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에게 신청서 인계 – 검사는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

○ 임시숙소 지원

- 범죄피해 발생 → 임시숙소 연계 → 지방청·경찰청 보고 → 숙박비·긴급부대비 지급

사 업 명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36-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0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35	1,632	1,632	1,632	1,632	-	-

4. 사업목적

- **(진술조력인 수당)**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의사를 원활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 비상근 진술조력인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 **(진술조력인 배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에게 진술조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피해자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
- **(진술조력인 양성)**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기존 진술조력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와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등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16(준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진술조사전문가 제도를 운용
- 2012년 국회 성폭력대책특위에서 국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위해 여성가족부의 진술조사전문가 사업은 2013년까지 유지 후 폐지, 법무부 진술조력인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여·야 합의
- 2013.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무부장관의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실시
- 2013. 12. 진술조력인 48명 자격부여
- 2014. 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 제도 지원범위를 아동학대범죄까지 확대
- 2015. 법무부에서 통합하여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사업 추진
- 2020. 1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참고인, 증인까지 진술조력 지원대상 확대
- 2022. 1.「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기존 지원대상인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장애인에서 모든 범죄(가정폭력 등) 피해자인 장애인으로 진술조력 대상 확대
- 2023. 1.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3세 미만의 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까지 진술조력 대상 확대
- 2023. 10.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19세 미만’으로 확대
- 2024. 12. 기준 진술조력인 총 194명 양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진술조력 총 4,231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양성]직접수행, [배치]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양성]법무부, [배치]법무부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19세 미만)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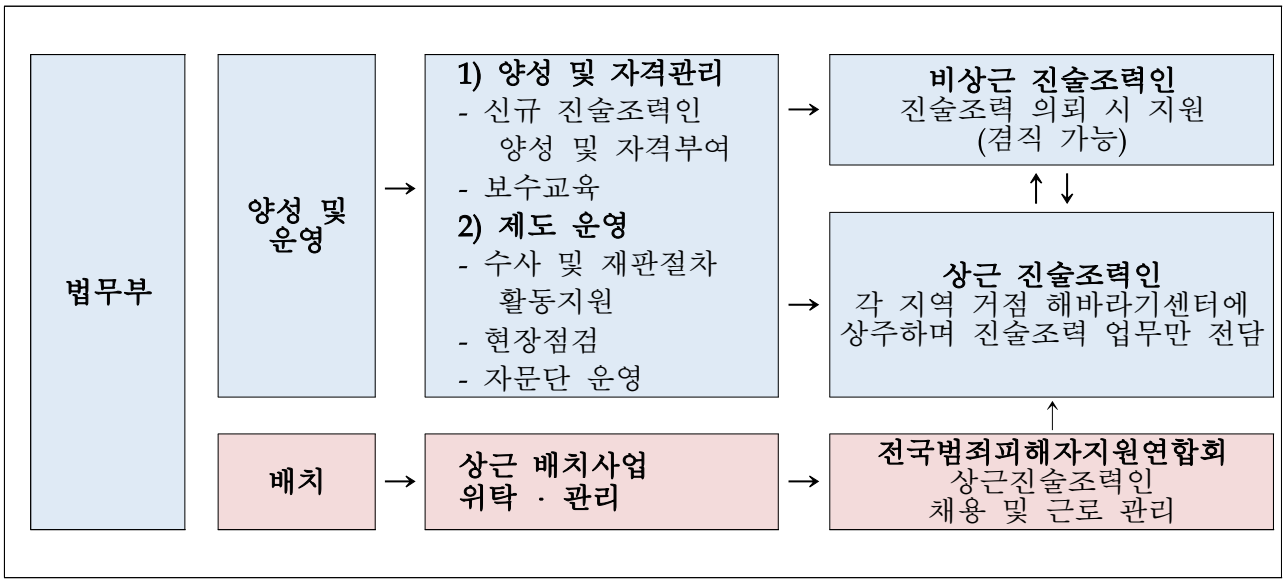

사 업 명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36-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권익증진국 (여성가족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성폭력 피해자 지원	36,732	37,354	37,354	39,413	39,413	2,059	5.5

4. 사업목적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등 통합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자, 가족, 친지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도록 의료비, 돌봄비, 치료동행 서비스,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성폭력 피해 사건의 법의학적 증거를 신속히 채취하기 위한

응급키트를 제작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에 배포

-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방지법 제4조에 따라 성폭력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3년 마다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6조, 제28조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95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신규 지원
- '95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지원
- '02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대책, 2002년』의 일환

- ’04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당초 복권기금)
- ’09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09.10월)
- ’10년 아동안전 보완대책 수립(’10.6월), 친족피해자아동청소년전용쉼터 신규설치 지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 ’04년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시작
  · ’05년 원스톱지원센터(위기지원형) 운영시작
  · ’10년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통합형) 운영시작
- ’10~’19년「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운영
- ’11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11.10월) 및 보완 대책(’11.12월) 수립

  ※ 법 제정에 따라 의무경비 지원 시행(시설입소자 생계비, 퇴소자자립지원금 등)
- ‘13년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13.6월)
- ‘14년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돌봄비용·치료동행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지원
- ‘15년 3종류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15.1월)
- ’17년「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및「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수립
- ’18년「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 보완대책」및「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수립(’18.3월)
- 국정과제「3-4-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국정과제「64-6.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4년~(계속)
- 사업규모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5개소), 상담소(99개소), 해바라기센터(4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7. 사업 집행절차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지자체 보조사업)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관리) → 상담소, 보호시설, 센터(피해자 상담 및 정산 보고 등)

○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보급

· 여성가족부(키트 제작, 배포) → 시도·시군구(키트 배부 요청) → 의료기관(키트 사용)

사 업 명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136-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5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당초	수정(B)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704	12,560	11,740	13,495	13,495	935	7.4

4. 사업목적

- (국선변호사 수당)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
- (교육, 홍보, 점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상 전문화 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 및 피해지 지원 기관 등에 제도 홍보,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 관리·감독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 및 배치하여 법률조력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75호) 등

② 추진경위

< 제도 도입 및 시행 과정 >

- '10. 10. 국가인권위,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등 법무부 등에 권고
- '10. 12. 법무부 인권국,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11년도 대통령연두 업무보고
- '11. 1. 법률조력인 도입방안 연구 용역 의뢰 및 '11. 5. 입법공청회 개최
- '11. 7. - 8.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규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1. 9. 15),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 지원 제도 규정
- '12. 3. 검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공포
- '12. 3.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제도 추진 경과 >

- '13. 6.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전체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확대
- '13. 7.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 '14. 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20. 12.「장애인복지법」 개정 공포, 지원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까지 확대

- ’21. 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 모든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필요적 선정
- ’21. 6.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지원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까지 확대
- ’22. 7.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군인 등의 범행 중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까지 확대
- ’23.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대상을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 ’23.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필요적 선정
- ’24. 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지원대상을 스토킹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피해자 지원 37,150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전담]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비전담]법무부 → 각급 검찰청, [전담]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법률구조공단	100%	법률구조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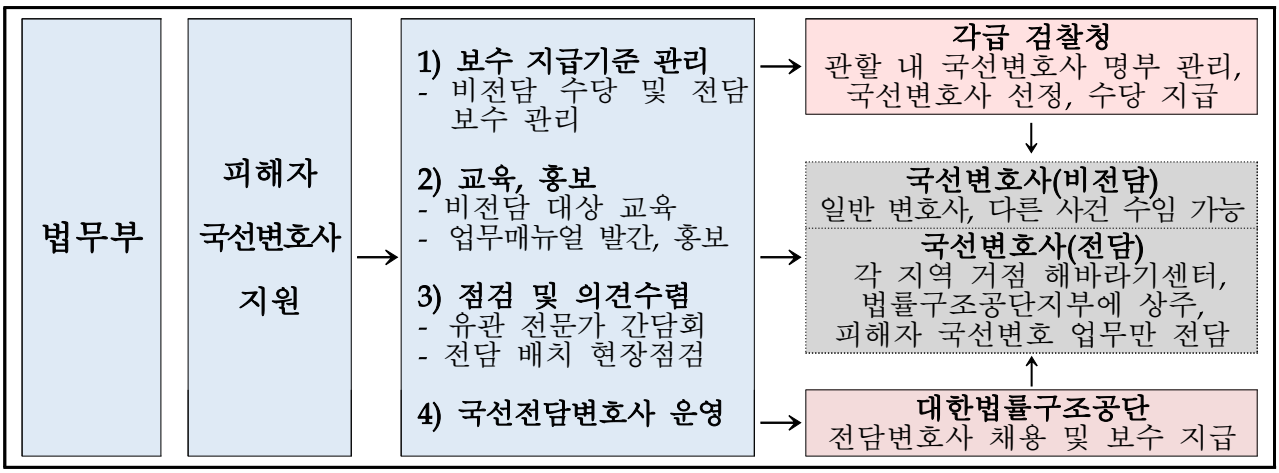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